방통융합정책연구 KCC-2020-2

방송통신발전기금 중장기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for improving management of Broadcasting Communications Development Fund

남승용 /이순환 /권오상 /성지연 /김민주 /최민정

2020. 12

연구기관 : 사단법인 미디어미래연구소

이 보고서는 2020년도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 방송통신 융합 정책연구사업의 연구결과로서 보고서 내용은 연구자의 견해이며,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제 출 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귀하

본 보고서를 『방송통신발전기금 중장기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의 연구결과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0년 12월

연구기관 :사단법인 미디어미래연구소
총괄책임자 : 남승용
참여연구원 : 이순환
권오상
성지연
김민주
최민정

목 차

제1장 서 론 ····· 1
1. 연구 필요성 ····· 1
2. 연구의 범위 ····· 2

제2장 방송사업자 분담금 현황 및 시장변화 ····· 3
제1절 국내 방송통신 관련 분담금 제도 현황 ····· 3
1. 개요 ····· 3
2. 방송통신발전기금 연혁 ····· 4
3. 방송사업자의 방송통신발전기금 현황 ····· 6
제2절 방송시장 변화 ····· 14
1. 전통적 방송사업자 ····· 14
2. 신규 사업자의 출현 등 ····· 18

제3장 사업자 부담금에 국내외 현황 ····· 27
제1절 부담금 법제도 ····· 27
1. 개요 ····· 27
2. 국내 부담금운용평가단의 부담금에 관한 평가 기준 ····· 29
3. 헌법재판소의 부담금에 관한 법리 기조 ····· 32
제2절 온라인 콘텐츠 부담금 해외 동향 ····· 45
1. 유럽연합의 OTT 분담금 현황 ····· 45
2. 프랑스 ····· 47
3. 독일 ····· 49
4. 디지털세에 관한 논의 ····· 50
제3절 국내 부담금 타법 사례 ····· 53
1. 개요 ····· 53
2. 각 법령에서 정하는 부담금 현황 ····· 53
제4절 OTT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부과 가능성 ····· 82

1. OTT 서비스에 대한 부담금 부과 필요성 ····· 82
2. OTT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부담금 부과에 대한 헌법적 정당성 판단 ····· 83
3. 기타 고려사항 ····· 88

제4장 방송발전기금 관리와 운용 ····· 92
제1절 부담금 운용 방법 ····· 92
1. 시장의 정부 개입 정당성과 부담금의 운용 ····· 92
2. 국가 지자체 업무의 민간위탁에 대한 법제도 ····· 94
3. 부담금 관리의 위탁 사례 및 체계 ····· 94
제2절 방송통신발전기금 위탁 운용 방안 ····· 101
1. 절차 및 업무 ····· 101
2. 수탁기관의 세부 업무 ····· 102
제3절 방송통신 발전기금의 용도 ····· 106
1. 제도 및 지출 현황 ····· 106
2. 신규 수요에 대한 제언 ····· 108

참고문헌 ····· 109

표 목 차

<표 2-1>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주요 연혁(2000년 이후)·····6
<표 2-2> 방송통신발전기금 근거법령 ·····7
<표 2-3> 사업자별 징수부과 기준과 대상·····8
<표 2-4>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용도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5조, 제26조)·····9
<표 2-5> 현행 유료방송 분담금 부과기준 및 징수율·····10
<표 2-6> 방송사업자 유형별 부담금 징수 현황·····11
<표 2-7>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의 기금의 조성과 용도·····12
<표 2-8> 2019년 기준 매체별 방송사업매출액 등·····15
<표 2-9> 전 세계 OTT 보급률 ·····18
<표 2-10> 글로벌 OTT 서비스 현황 및 요금·····20
<표 2-11> 유료방송 가입 가구 비율 ·····22
<표 2-12> 국내에서 이용가능한 OTT 서비스 현황·····23
<표 3-1> 조세와 부담금의 차이점·····28
<표 3-2> 주요수수료 및 부담금의 조세 및 비조세 구분 ·····29
<표 3-3> 헌법재판소 판결을 통한 기금의 성격 재정립·····32
<표 3-4> 비용부담 형태에 따른 부담금 유형·····33
<표 3-5> 목적에 따른 부담금 유형·····34
<표 3-6> 분담금 종류별 주요 내용·····47
<표 3-7> 프랑스의 유튜브세 관련 연혁·····48
<표 3-8> 2019년 디지털세에 관한 OECD 제안·····51
<표 3-9> 집단적 동일성 판단 헌법재판소 사례·····84
<표 3-10> 객관적 근접성 판단 헌법재판소 사례·····85
<표 3-11> 집단적 책임성 판단 헌법재판소 사례·····87

<표 3-12> 집단적 효용성 판단 헌법재판소 사례 ····· 87
<표 3-13> 넷플릭스, 구글 국내법인 현황 ····· 90
<표 4-1> 공공기관의 기금 관리·운용 수탁 사례 ····· 95
<표 4-2> 한국국제협력단의 기금운영 사업 ····· 97
<표 4-3> 기금운용계획 관련 업무 절차 ····· 102
<표 4-4> 기금결산 업무 절차 ····· 103
<표 4-5>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출 현황 ····· 107

그 림 목 차

[그림 2-1] 유료방송 매체별 가입자 ····· 14
[그림 2-2] 유료방송 매체별 가입자 점유율 ····· 14
[그림 3-3] 스마트폰 방송프로그램 시청 정도 ····· 16
[그림 2-4] 지상파 광고매출액과 유료방송 가입자 추이 ····· 16
[그림 2-5] 국내 방송서비스시장 매출액 및 구성 ····· 17
[그림 2-6] 글로벌 OTT 매출액 현황 및 전망 ····· 19
[그림 2-7] 글로벌 유료방송 및 OTT 매출 현황 및 전망 ····· 19
[그림 2-8] 미국 유료방송 및 OTT 서비스 가입율 ····· 20
[그림 2-9]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이용률 ····· 22
[그림 2-10] 유료방송 및 OTT 서비스 이용률과 유료결제 이용률 ····· 23
[그림 2-11] OTT 서비스 유형 ····· 24
[그림 4-1] 기금 관리 수탁기관 업무 절차(안) ····· 102

요 약 문

1. 제 목

방송통신발전기금 중장기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 연구 목적 및 필요성

방송시장은 방송프로그램의 화제성, 사회·문화적 가치, 다양한 콘텐츠가 제작, 유통되는 생태계다. 시청자 또는 이용자가 다양한 콘텐츠를 소비하고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콘텐츠가제작되는 등 부가가치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산업·경제적 파급효과가 발생한다.

방송콘텐츠는 일반적으로 기획, 제작, 편성, 송출되는 일련의 과정을 가지고 있다. 방송콘텐츠 서비스는 흐름의 단계별로 다양한 이슈가 존재하고 국민이 이용하는 파급력이 큰 서비스이다. 즉, 방송생태계는 양질의 콘텐츠 제작을 시작으로 생태계가 순환되는 구조로 다양한 장르를 다양한 시각에서 제작, 편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주요 용처 중 방송프로그램, 콘텐츠 제작 지원 등의 공적 지원체계는 상기의 생태계를 고려한 것으로 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에 중요한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현행의 법제도는 「방송법」 제9조에 따른 방송사업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4조에 따라 방송사업을 허가 받거나 승인 받은 사업자에게 기금(부담금 혹은 분담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이를 방송 생태계 발전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별도의 방송전송망[1]이 아닌 범용인터넷 망을 통하여 방송프로그램 등의 콘텐츠를 제공하는 OTT(Over The Top)사업자의 출현으로 기존 방송 생태계의 형태가 바뀌고 있다. 이에 따라, 현행 허가·승인의 대상 영역에서의 한정적인 기금을 부과하는 형평성에서 논의가 진행되어 왔으며 일례로 프랑스에서는 OTT사업자인 넷플릭스에게 국내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유사한 형태의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우리 역시 방송생태계의 변화를 고려하여 기존의 방송통신발전기금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 여부의 검토가 필요하다.

1) 지상파 방송용 주파수, 위성 방송 주파수, 종합유선방송의 HFC 전송망 등

이에 따라 본 보고서는 국내 방송시장의 발전을 위해 변화하는 방송시장에서 OTT 사업자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부과가능성 및 그 형태와 현행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현황을 바탕으로 방송생태계 변화에 적합한 기금 운용을 위한 개선안 등에 대하여 조사, 분석 하였다.

3. 연구의 구성 및 범위

본 보고서는 4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2장은 현행 방송사업자 분담금 현황 및 시장 변화를 고찰했다. 제3장에서는 현행 「국가재정법」, 「부담금관리 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내 부담금 제도 전반을 살펴보고, 최근 결정된 온라인 유통 등에 관한 디지털세, 프랑스의 OTT 부담금 부과 배경과 현황을 기술하였다. 제4장에서는 방송발전기금의 일부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직접 관리 운용하고 있는 현행 방식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용하기 위한 사례 및 방법론을 기술하였다. 제5장에서는 변화하는 방송시장을 고려하여 현행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에서 규정하는 기금 용도의 변화 필요성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4. 연구 내용 및 결과

프랑스, 독일에서는 OTT 서비스에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최근 국회에서도 유료방송과 동일, 유사한 OTT서비스에 방송통신발전기금의 부과 논의가 있어왔다. 국내 사업자 등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은 「부담금관리기본법 」에 명시된 부담에 국한하여 세부적인 산정방식으로 그 규모를 산정하고 부과대상 등을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보고서에서는 국내 부담금 관리기본법에서 규정한 부담금의 유형, 산정방식을 살펴보았다.

부담금은 공익과 사익의 조화를 통한 부담의 합리적 조정이 중요하며, 사익과 공익의 균형성의 판단은 수익자부담금·원인자부담금 및 손상자부담금의 유형별로 달라질 수 있다.

부담금 유형	내용
수익자부담금	공익사업으로부터 특별한 이익을 받는 자에게 특별한 이익의 범위 안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시키는 형태
원인자부담금	특정인의 행위가 공적인 비용을 유발한 경우 그 원인제공자인 특정인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형태
손상자부담금	공적인 시설에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해당 시설의 유지, 수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시키는 형태

헌법재판소는 부담금에 대해 조세의 예외로 엄격한 요건을 제시하고 있으나, 부담금의 성격이 정책실현목적을 가진 경우 요건들 중 일부가 완화될 수 있다고 하여 부담금의 분류별로 판단기준이 달라질 수 있음을 판시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부담금을 재정조달목적 부담금과 정책실현목적 부담금으로 구분하여 판단하고 있으며, 정책실현목적 부담금은 재정조달의 목적과 함께 특정한 사회·경제정책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부담금을 부과하는 유형이다.

부담금의 유형		내용
재정조달목적 부담금		순수하게 재정조달 목적만 가지는 것
정책실현목적 부담금		부담금의 부과 자체로 추구되는 특정한 사회·경제정책 실현의 목적을 가지는 것
	유도적 부담금	국민의 행위를 일정한 정책적 방향으로 유도하는 수단
	조정적 부담금	공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과 그것을 이행한 사람 사이 혹은 공공의 출연(出捐)으로부터 특별한 이익을 얻은 사람과 그 외의 사람 사이에 발생하는 형평성 문제를 조정

헌법재판소는 부담금의 정당성에 관하여 4가지 판단 요소를 고려하여 헌법적 정당성을 판단하고 있는바, OTT서비스 제공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할 경우 그 정당성을 살펴보았다. OTT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부담금을 부과함에 있어 일반 국민과 구별되는 형식적 집단적 동일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국내 방송프로그램 다시보기, 유료방송사업자가 제공하는 VoD와 중첩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기존 방송사업자와 동일·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집단적 동일성). OTT서비스 제공자는 현재 방송통신시장

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방송통신발전기금의 목적이 방송통신의 진흥에 있음을 고려할 때 객관적 근접성의 여지가 있다(객관적 근접성). OTT 서비스 제공자는 유료방송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방송통신 발전의 목적을 가지고 조세외적 부담을 져야 하는 책임 있는 집단에 포함될 여지가 있다(집단적 책임성). 기금의 용도 범위에 OTT 서비스를 구성하는 콘텐츠 등에 대한 지원이 포함되어 있어 직간접적인 수혜 집단이라 볼 수 있다(집단적 효용성). 이러한 요건 판단에 따라 헌법적 정당성이 긍정되더라도 대상과 징수율 등은 법적으로 명확히 하여야 할 것이며 역외사업자에 대응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방송통신발전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기금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우선 ①수탁기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회계사무를 위탁하고 해당 회계를 별도로 분리하여야 한다. ② 해당 기금이 사업자 등의 선정 업무가 포함된 경우에는 사업자 선정, 집행 등의 업무를 포함하여 업무를 포함하여 세부적인 실행 업무를 포함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에서 기금의 관리·운영을 책임질 수 있는 자를 선정하고 정기적인 보고와 관리감독을 수행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④ 기금 관련 납부금의 수납 및 관리에 관한 사무 또한 위탁 사무로 규정하여 소모성 업무를 위탁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내부 역량 강화에 자원을 순환할 수 있다. ⑤수탁받은 기관이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보고하고 국가기관은 이를 승인하는 절차를 두어 다양한 전문가들이 계획안에 참여하여 시장 전반의 이해도를 높이는 절차를 마련 할 수 있다.

최근 시장은 융합환경, 5G 등 고려한 기술발전, 시장구조변화, 이용자보호 등에 대한 연구 및 제도개선, 공적기구에 의한 광고데이터유통 플랫폼 구축, AR/VR 등 신규 융합서비스 제작/개발, 중소 제작사 창작 지원, 취약매체 지원, 방송콘텐츠 아카이브 등 다양한 기금 수요가 새롭게 발생되고 있다. 기금의 용도는 기존에는 물적, 제작지원 중심의 일괄·총액 할당방식(lump-sum)의 틀에 새로운 방식 적용이 필요하다. 전통적 미디어는 지원과 균형발전을 보조하고 지원하는 체계로 용도를 설정하고, 신규 미디어 혹은 시장 혁신형 미디어는 개발, R&D 등으로 구분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

5. 정책적 활용 내용

분담금의 공동책임 강화를 위한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5조(기금의 조성), 동법 시행령 제12조(분담금의 징수) 및 관리체계 등 관련 고시 등 합리적 규제체계 개선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며, 방송시장 및 미디어 이용행태, 정책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OTT 등 기금 부과 여부 및 관리체계 합리적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방송통신발전기금금 공평부담 원칙에 따른 부과기준/범위 등 개선방안 및 관련 법령 개정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방송통신 분담금 제도 개선방안 도입시점 등을 정하기 위해 OTT 등 산업 생태계 영향 등 분석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6. 기대효과

방송시장 환경변화에 따른 분담금 부과기준, 부과 대상, 산정식, 관리 체계 재정립으로 관련 방송 및 미디어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부과기준 및 범위, 관리 체계의 형평성 및 예측가능성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중장기적인 기금사업 기획 및 집행의 효율성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관련 제도의 개선으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기금의 운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이며, 방송통신 관련 부문 성장의 연속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다양한 미디어 서비스의 출현과 시장 변화를 도래하여 국내 방송프로그램 및 방송콘텐츠 등 관련 산업의 발전과 양질의 콘텐츠 제작 등 미디어 생태계의 positive 파급효과가 예상되고, 방송통신발전기금 재원 확보 및 지속 지원을 통한 미디어 생태계의 선순환 생태계의 파급효과가 예상된다.

제1장 서 론

1. 연구 필요성

방송시장은 방송프로그램의 화제성, 사회·문화적 가치, 다양한 콘텐츠가 제작, 유통되는 생태계다. 시청자 또는 이용자가 다양한 콘텐츠를 소비하고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콘텐츠가제작되는 등 부가가치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산업·경제적 파급효과가 발생한다.

방송콘텐츠는 일반적으로 기획, 제작, 편성, 송출되는 일련의 과정을 가지고 있다. 방송콘텐츠 서비스는 흐름의 단계별로 다양한 이슈가 존재하고 국민이 이용하는 파급력이 큰 서비스이다. 즉, 방송생태계는 양질의 콘텐츠 제작을 시작으로 생태계가 순환되는 구조로 다양한 장르를 다양한 시각에서 제작, 편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주요 용처 중 방송프로그램, 콘텐츠 제작 지원 등의 공적 지원체계는 상기의 생태계를 고려한 것으로 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에 중요한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현행의 법제도는 「방송법」 제9조에 따른 방송사업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4조에 따라 방송사업을 허가 받거나 승인 받은 사업자에게 기금(부담금 혹은 분담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이를 방송 생태계 발전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별도의 방송전송망[2)]이 아닌 범용인터넷망을 통하여 방송프로그램 등의 콘텐츠를 제공하는 OTT(Over The Top)사업자의 출현으로 기존 방송생태계의 형태가 바뀌고 있다. 이에 따라, 현행 허가·승인의 대상 영역에서의 한정적인 기금을 부과하는 형평성에서 논의가 진행됐으며 일례로 프랑스에서는 OTT 사업자인 넷플릭스에게 국내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유사한 형태의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우리 역시 방송생태계의 변화를 고려하여 기존의 방송통신발전기금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없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본 보고서는 국내 방송시장의 발전을 위해 변화하는 방송시장에서 OTT 사업자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부과 가능성 및 그 형태와 현행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현황을 바탕으로 방송생태계 변화에 적합한 기금운용을 위한 개선안 등에 대하여 조사, 분석하였다.

2) 지상파 방송용 주파수, 위성 방송 주파수, 종합유선방송의 HFC 전송망 등

2. 연구의 범위

본 보고서는 5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2장은 현행 방송사업자 분담금 현황 및 시장 변화를 고찰했다. 제3장에서는 현행 「국가재정법」, 「부담금관리 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내 부담금 제도 전반을 살펴보고, 최근 결정된 온라인 유통 등에 관한 디지털세, 프랑스의 OTT 부담금 부과 배경과 현황을 기술하였다. 제4장에서는 방송발전기금 일부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직접 관리 운용하고 있는 현행 방식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용하기 위한 사례 및 방법론을 기술하였다. 제5장에서는 변화하는 방송시장을 고려하여 현행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서 규정하는 기금 용도의 변화 필요성에 관하여 기술하였다.

제2장 방송사업자 분담금 현황 및 시장변화

제1절 국내 방송통신 관련 분담금 제도 현황

1. 개요

부담금 또는 기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부문의 육성과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원활한 자금 지원을 하거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에 수반되는 자금의 효율적인 운용과 관리를 위해 설치되어 왔다. 국가 및 지자체 재정 활동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등 세입·세출 예산에 의하여 운용되고 있다. 그러나 일반회계, 특별회계는 환경변화에 능동적·탄력적·지속적으로 대응하기 곤란하여 기금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기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연구·개발 사업이나 그 밖의 특정 정책사업 등 특정 부문의 육성과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원활한 자금 지원을 목적으로 연관된 집단에게 부과한다.

부담금 또는 기금 등은 「국가재정법」,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장, 지방자치단체장, 행정권한을 위탁받은 공공단체장 등이, 금전적 부담의 부과 권한자가 개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를 통칭하는 개념이다. 기금은 「국가재정법」 제5조[3]에 따라 기금을 설치할 수 있는 개별 법률을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로써 설치토록 규정되어 있다. 방송통신발전기금은 국가재정법 [별표2] 제24호에 규정되어 있으며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동법 [별표]에 나열된 95개 항목에 해당된다. 방송통신발전기금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 내지 제27조에서 기금 조성 목적, 용처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부담금관리 기본법」 별표 74

3) 국가재정법 제5조(기금의 설치) ①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로써 설치하되, 정부의 출연금 또는 법률에 따른 민간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은 별표 2에 규정된 법률(70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

호.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담금에 해당된다.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징수하는 근거로 기존에는 주파수 이용에 따른 초과이윤의 회수[4]를 생각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 방송은 한정된 주파수자원의 이용권을 배타적이고 독점적으로 확보함으로써 초과이윤을 발생시키는 속성이 있다. 이에 따라 면허를 진입규제로 두게 되는데, 면허사업자는 시장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비용을 지출하지 않거나 최소한의 지위로 독과점적 지위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초과이윤을 징수하여 공익에 이바지하는 것이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취지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주파수의 이용뿐 아니라 엄격한 진입규제를 통해서 방송시장에 진입하는 사업자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고 국가의 정책 등에 따라 독과점이 인정되는 방송사업자들에게 초과이윤의 회수가 방송통신발전기금 징수의 근거가 된다고 본다.

다른 한편에서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이 방송발전을 위한 행정비용을 포함한다고 볼 수도 있다.[5] 공공이익의 제고 및 방송발전 도모를 통해 방송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방송 발전 및 관리비용으로 이해된다. 방송통신발전기금의 목적이 수익자 부담의 성격을 가지는 경제적 지대의 회수와 원인자 부담의 성격을 가지는 행정 및 관리비용의 충당으로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보고, 행정수수료는 모든 사업자에게 부담시키되 경제적 회수는 영업이익에서 회수해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전통적인 징수 근거 이외에 방송시장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정책 논리가 필요하다는 견해도 있다. 여론집중도와 같은 사회적 영향력 지수 개념을 도입하여, 기금정책의 논리 개발 및 포섭범위 확대를 주장하는 입장이다.[6] 특히 대기업 계열 PP, 포털사업자 등이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한다.

2. 방송통신발전기금 연혁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원형은 1980년 12월 제정된 「한국방송광고공사법」 제20조(방송광고대행수수료등)[7]에서 규정된 공익자금의 개념에서 출발한다. 당시 광고대행수수료는

4) 이화진(2005), 유승훈(2012).

5) 유승훈(2012).

6) 김광재(2018)

언론공익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이는 공적 기금의 조성 토대를 확립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공적 재원으로 사용되는 광고수수료는 초기에 ‘언론공익사업’을 위한 목적에 국한되었으나, 1982년 12월 동법 제20조를 개정하여 그 용처를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에 확대하였다. 2000년 「방송법」 제36조(방송발전기금의 설치)와 관련된 사항을 개정하여 현행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유사한 형태로 제정[8]되었다.

현행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은 2011년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이 제정되어 방송통신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하여 방송사업자 분담금(방송발전기금)과 주파수 할당 대가(정보통신진흥기금의 일부)를 통합하여 운영되고 있다. 양 부문의 비율은 방송발전기금이 45%, 정보통신진흥기금이 55%이다. 기금 조성 및 설치 근거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방송통신발전기금의 설치)에 따른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제정 전에는 이원적으로 기금 운영 체계가 이루어 졌으며 방송 부문과 통신부문의 방식 및 규모의 차이가 있었다. 현재는 시대적 환경변화에 맞춰 통합 운용되고 있다.[9]

방송통신발전기금은 2000년 방송위원회가 주관해서 운영하던 방송발전기금으로부터 시작돼, 네 차례의 법 개정을 거치면서 현재의 기금형태가 확립되었다. 주요 법 개정과 내용은 다음의 표와 같다.

7) 한국방송광고공사법 제20조 (방송광고대행수수료등) ①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을 방송한 방송국은 문화공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광고대행수수료로서 일정액을 공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 중 정관이 정하는 률의 일정액을 언론공익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8) 방송진흥사업 및 문화·예술진흥사업을 위하여 방송발전기금을 설치

9) 김광재, ‘방송통신발전기금, 정당성과 그 정책적 방향’, 방송문화 2016년 가을호, 한국방송협회, 2016, 197면.

<표 2-1>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주요 연혁(2000년 이후)

년도	주요 내용	비고
2000	ㅇ 방송발전기금 - 관리주체 : 방송위원회 - 관리기관 : 방송위원회 - 운용규모 : 1,070억 원	(통합)방송법
2008	ㅇ 방송발전기금 - 관리주체 : 방송통신위원회 - 관리기관 : 방송통신위원회 - 운용규모 : 2,418억 원	(통합)방송법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관리
2011	ㅇ 방송통신발전기금 - 확대 : 방송발전기금, 주파수할당대가 - 관리주체 : 방송통신위원회 - 관리기관 : KCA - 운용규모 : 5,445억 원	방송통신발전기본법
2013	ㅇ 방송통신발전기금 - 관리주체 : 방송통신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 관리기관 : 방송통신위원회,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과기부 소관) - 운용규모 : 1조 795억 원	
2014	ㅇ 운용규모 : 1조 795억원	

2011년 방송통신발전기금은 주파수 할당대가와 방송사 사업자 부담금, 정부 출연금 등을 주요 재원으로 조성되며, 기금의 관리운용은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동으로 소관하고 있다.

3. 방송사업자의 방송통신발전기금 현황

방송부문의 기금을 부담하여야하는 대상 방송사업자는 ① 지상파, 종합편성PP, 보도전문PP, ② 유료방송사업자(케이블SO, 위성방송, IPTV), ③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홈쇼핑 PP[10] 등 세 가지로 구분된다. 3가지 유형은 모두 현행 「방송법」 제9조,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4조에 따른 사업 허가 및 승인 대상이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지상파, 종합편성PP, 보도전문PP의 기금을 소관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유료방송사업자및 홈쇼핑사업자의 기금을 담당하고 있다. 방송통신발전기금은 방송사업자의 유형별로 부담금의 부과기준과 징수율의 범위를 다르게 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징수율은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

징수 대상 및 징수율은 사업의 종류, 사업자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다.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종편PP, 그리고 보도PP는 방송광고매출액을 대상으로 부과하고 종합유선방송 및 위성방송, IPTV 사업자는 방송서비스매출액을 대상으로 부과하고 있다. TV홈쇼핑방송은 결산상 영업이익을 대상으로 부과하고 있다.

<표 2-2> 방송통신발전기금 근거법령

구분	근거법령	주요내용	비고
설치 및 조성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4조(방송통신발전기금의 설치), 제25조(기금의 조성)	설치목적, 재원, 분담금 납부대상자, 징수기준, 최대징수율, 면제·경감 및 징수율 차등책정 등	법
징수 및 면제·경감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제12조(분담금의 징수), 제13조(분담금의 면제·경감 및 가산금)	분담금 징수율 결정시 고려사항(방송운용의 공공성, 방송시장 경쟁상황, 수익규모 및 재정상태 등), 분담금 면제·경감 및 가산금 등	시행령
산정 체계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산정 및 부과에 관한 세부사항(과기정통부)	방송사업자별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의 부과기준, 징수율, 산정기준, 납부기한, 납부절차 등	고시
징수 및 부과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부과 등에 관한 사항(방통위)		

현행 방송사업자 분담금은 홈쇼핑사업자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자의 분담금 징수율 상한선을 방송관련 매출액의 6%으로 설정하고 TV홈쇼핑사업자는 결산상 영업이익의 15%이다. 구체적으로 사업자별 징수부과 기준과 대상 등 기금의 적용방식을 정리한 것이 다음 표와 같다.

<표 2-3> 사업자별 징수부과 기준과 대상

구분	사업자	부과비율
지상파방송	**지상파TV**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문화방송 에스비에스 지역MBC, 지역민방 등 **지상파라디오방송사업자** YTN, 영어FM 등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YTN DMB, 유원미디어, 한국DMB 등 * 16개 겸영사업자는 주된 사업인 지상파방송사업에 포함	해당연도 방송광고 매출액의 6/100이내
종합편성채널	JTBC, 채널A, 매일방송, 조선방송	
보도전문채널	YTN, 연합뉴스	
종합유선방송	LG헬로, 티브로드, 씨엠비 등	전년도 방송서비스 매출액의 6/100
위성방송	일반위성방송사업자 KT스카이라이프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SK텔링크 (현재 사업중단)	
IPTV	SKB, KT, LGU+	
홈쇼핑 채널	텔레비전방송채널사용사업자 (데이터방송채널사용사업 겸업자 포함)	전년도 방송사업 관련 결산상 영업 이익의 15/100이내
	데이터방송채널사용사업자	

기획재정부에서는 시장에서 소외되거나 적절한 재원이 없는 분야의 시장실패를 완화하는 재원으로 활용하고, 긍정적 외부효과를 견인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 목적임을 밝히고 있다.[11] 방송통신발전기금 또한 기획재정부에서 밝히는 목적하에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용도(용처)는 방송분야, 통신분야, 방송과 통신 공통 분야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공통 분야는 연구개발사업, 표준개발, 인력양성, 서비스 활성화 및 기반 조성이 해당된다.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고 전송망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시장환경을 고려할 경우 연구개발, 표준개발, 인력양성, 서비스 활성화 및 기반 조성 등의 분야가 공통 분야에 해당된다.

방송 분야는 지역 및 중소 지상파방송의 공익적 프로그램 제작 지원, 시청자 제작 프로그램과 미디어교육 지원이 해당된다. 통신 분야는 주파수 회수 손실보상금, 반환하는 주파수 할당 대가 지원[12]이 이에 해당된다. 과거 「전기통신사업법」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연구개발 출연금을 부과하였으나 이는 해당 조문이 일몰되었으며 현재는 주파수를 할당받아 이동통신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주파수 할당대가과 관련된 부분에 통신 분야에 속해있다.

현행의 방송통신발전기금(통신분야)은 과거 정보통신진흥기금과 유사하다. 양 기금은 정보통신의 진흥과 방송통신의 발전을 위해 사용하는 기금으로 그 목적이 동일, 유사하고, 기간통신사업자의 주파수 할당 대가(이용대가)를 재원으로 하고 있으며, 연구개발사업과 표준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업 등에 용도가 있어 매우 유사하다.

<표 2-4>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용도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5조, 제26조)

구분	주요 내용
방송	1. 지역 및 중소 지상파방송의 공익적 프로그램 제작지원 2. 시청자 제작 프로그램과 미디어교육 지원 3.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 운영 비용 4. 해외 한국어 방송 지원 5.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 지원
통신	주파수 회수 손실보상금, 반환하는 주파수 할당 대가 지원
공통	1. 연구개발 사업 2. 표준개발 3. 인력양성 4. 서비스 활성화 및 기반 조성 5. 공익·공공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방송통신 지원 6. 콘텐츠 제작유통 지원 7. 시청자와 이용자의 피해구제 및 권익증진 사업 8. 광고 발전 9. 소외계층의 접근권, 남북 및 국제 교류협력 10. 그 밖에 방송통신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방송통신발전기금은 방송사업자 통신사업자 및 사업자의 매출규모, 매체의 형태 등을

고려하여 징수 기준과 징수율이 적용에 차이가 있다. 지상파방송, 종편 PP, 보도 PP의 부담금은 전년도 방송광고 매출액의 6% 이내에서 징수율을 고시로서 결정하고 있다.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 IPTV는 전년도 방송서비스 매출액의 6% 이내에서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관련 고시에서 동일시장으로 판단하여 최종 징수율은 1.5% 수준이다. 이중 개별SO는 배출액 구간별로 징수율을 달리 결정하고 있다, TV홈쇼핑 사업자는 전년도 영업이익의 15% 이내에서 징수율을 결정하고 있다.[13]

방송사업자의 분담금 징수율 산정 시 방송운영의 공공성, 방송시장의 경쟁상황, 해당사업자의 수익규모 및 재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 분담금을 면제·경감하거나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14] 방송사업자별 부담금 기준과 징수율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와 같다.

<표 2-5> 현행 유료방송 분담금 부과기준 및 징수율

구 분	부과기준	징수율 (고시)
지상파방송, 종합편성 및 보도 PP	전년도 방송광고 매출액	기본징수율, 광고매출 구간, 조정계수 적용
종합유선방송[15], 위성방송,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서비스 매출액	1.5%
홈쇼핑방송	방송사업 관련 결산상 영업이익	텔레비전방송채널사용사업자 13% (데이터방송채널사용사업 겸업자 포함)
		데이터방송채널사용사업자 10%

기금 규모 측면에서는 2010년 방송통신 기본법이 제정되면서 2011년 이후 기금 규모가

13)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5조 제2항~제5항.

14)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제12조, 제13조.

15) 다만,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중「방송법 시행령」제3조의 특수관계자를 포함하여 1개의 종합유선방송구역에서만 사업을 영위하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로 방송서비스매출액이 200억원 미만인 사업자에 대한 분담금은 방송서비스매출액에 구간별 징수율(매출액 100억 이하 구간에 1.0/100, 매출액 100억 초과구간에 1.5/10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부과.

증가하였다. 2010년 2,992억 원 수준에서 2019년 1조 2,579억 원에 수준으로 증가하였으며 이는 2019년 사업자의 주파수 할당 대가와 방송사 사업자 부담금이 증가한 데 기인한다.[16]

방송사업자들이 부담하는 기금은 큰 변동없이 정체하고 있다. 지상파 방송사업자는 광고매출 축소로 인해 862억 원에서 362억 원으로 감소하였으나 IPTV 사업자는 2015년부터 기금이 증가, 2016년부터 종편 및 보도PP에서 기금을 납부하고 있어 매체별로 감소와 증가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표 2-6> 방송사업자 유형별 부담금 징수 현황 (단위 : 억 원)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지상파	862	907	766	759	262	602	620	519	445	360
SO	359	389	431	486	505	460	386	322	316	308
위성방송	35	35	37	66	73	74	73	85	86	83
홈쇼핑	415	500	539	560	687	672	468	551	597	491
IPTV						67	169	320	387	496
종편PP							8	14	35	51
보도PP							3	6	18	

주) 출처 : 기획재정부, 〈부담금 운용종합보고서 〉 각 연도

방송통신발전기금은 방송시장 및 미디어시장 환경변화에 탄력적이지 못하다는데 한계가 있다. 이는 기존 시장 및 방송사업자를 수범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기존 방송사업자[17]의 시장 진입과정에 부과되던 부담금이 OTT와 같은 신규 사업자들에게 적용되지 않는 불균형한 제도라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2019년 업무계획을 통해 국내외 사업자 간 역차별 해소하고, 종편PP 규제 합리화 등 방송사업자 간 규제 형평성 제고하며, OTT 서비스 제도화 등 신규서비스활성화 지원 및 제도 정비를 추진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으나 OTT 관련 현행 기금 관련법의 개정은 이루

어지지 않고 있다[18]. 방송통신발전기금이 지금의 미디어 시장 환경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은 2010년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이 제정되었을 당시의 기금 조성 및 용도에 대한 내용과 비교하여 현재 현행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기금 관련 내용은 용도가 일부 확대되긴 하였으나 기존 용도가 분화되어 규정된 것에 불과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아래의 표와 같이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근거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조성 대상, 용도는 큰 변화가 없으며 일부 지원 내역이 추가되는 정도에 불과하다. 이러한 실정은 법제도적인 틀의 개정이 없는 상황에서는 시장환경, 사업자 환경을 고려하여 징수율을 조정하거나, 용도를 일부 확대하는 조정밖에 할 수 없는 실정이다.

방송통신 시장에는 신유형 사업자들이 등장하고 있다. 이는 방송 생태계가 확대되고 전통적인 사업자가 기존 서비스 유형으로는 새로운 시장에서 과거와 같이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생태계 또는 시장의 확대에 따라 신유형의 사업자를 포섭하거나 기존 사업(허가, 승인의 사업 유형)이 과거와 같이 유지하기 어려울 경우라면 이를 조정하거나, 변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표 2-7>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의 기금의 조성과 용도

구분	2010년 제정 당시	2020년 기준 (2018년 개정)
기금 조성 등	ㅇ 정부의 출연금 또는 융자금 ㅇ 주파수할당 대가 및 보증금 ㅇ 사업자 분담금	ㅇ 정부의 출연금 또는 융자금 ㅇ통신수 주파수할당 대가 및 보증금 ㅇ 사업자 분담금
	ㅇ 지상파, 종편, 보도전문채널 방송광고 매출액의 6% 이내 ㅇ SO, 위성방송사업자 , IPTV사업자 방송서비스 매출액의 6% 이내 ㅇ홈쇼핑사업자 영업이익의 15% 이내 ㅇ 기타 출연금, 수익금 등	ㅇ 지상파, 종편, 보도전문채널 방송광고 매출액의 6% 이내 ㅇ SO, 위성방송사업자 , IPTV사업자 방송서비스 매출액의 6% 이내 ㅇ홈쇼핑사업자 영업이익의 15% 이내 ㅇ 기타 출연금, 수익금 등 ㅇ 분담금의 면제, 경감 및 가산금 기준을 대통령으로 정할 수 있게 함
기금 용도	ㅇ 방송통신 연구개발 사업 ㅇ 방송통신 표준 개발 및 보급 사업 ㅇ 인력 양성 사업	ㅇ 방송통신 연구개발 사업 ㅇ 방송통신 표준 개발 및 보급 사업 ㅇ 인력 양성 사업

구분	2010년 제정 당시	2020년 기준 (2018년 개정)
	ㅇ 방송통신서비스 활성화 및 기반 조성 사업 ㅇ 공익·공공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방송통신 지원 ㅇ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방송프로그램 및 미디어 교육 지원 ㅇ 시청자와 이용자의 피해구제 및 권익증진 사업 ㅇ 방송통신광고 발전을 위한 지원 ㅇ 방송통신 국제 및 남북 교류 지원 ㅇ 해외 한국어 방송 지원 ㅇ 주파수 관리 및 반환 대가	ㅇ 방송통신서비스 활성화 및 기반조성 사업 ㅇ 공익·공공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방송통신 지원 ㅇ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방송프로그램 및 미디어 교육 지원 ㅇ 시청자와 이용자의 피해구제 및 권익증진 사업 ㅇ 방송통신광고 발전을 위한 지원 ㅇ 방송통신 국제 및 남북 교류 지원 ㅇ 해외 한국어 방송 지원 ㅇ 주파수 관리 및 반환 대가
	ㅇ 콘텐츠 제작·유통 지원 ㅇ 방송통신 소외계층 접근 지원 ㅇ 그 밖에 필요하다고 방통위가 의결한 사업	ㅇ 콘텐츠 제작·유통 및 부가서비스 개발 지원 ㅇ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와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의 공익적 프로그램의 제작 지원 ㅇ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 운영 비용 지원 ㅇ 지역지상파, 중소지상파 공익 프로그램 지원 ㅇ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 수행지원 ㅇ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2절 방송시장 변화

1. 전통적 방송사업자

실시간 IPTV가 도입된 2010년부터 2020년 9월까지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는 3,467만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상파를 직접수신하고 있는 세대는 점차 줄고 있으나 유료방송을 통한 재전송, 지나간 방송프로그램을 VoD 등을 통하여 시청하는 행태가 늘고 있다. 이는 익히 미디어 시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실시간(선형) 시청행태에서 비실시간(비선형) 시청 전환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2-1] 유료방송 매체별 가입자 (단위 : 만)

[그림 2-2] 유료방송 매체별 가입자 점유율

주) 자료 : KCTA, 각사 IR자료 및 사업보고서 재구성[19]

2020년 9월 기준, 유료방송시장에서의 케이블방송 가입자 점유율은 약 38.2%, IPTV는 52.3%, 위성방송은 9.5% 수준이다. 유료방송의 유선방송 가입자 점유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며 IPTV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KT-sky라이프의 위성방송 가입자 점유율은 소폭 감소하는 추세이다.

매체별 매출액 부문을 살펴보면 종합유선방송은 2013년 이후 감소하고 있으며, IPTV는 가입자 증가와 함께 매출액 또한 지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위성방송 가입자가 정체되어 매출액은 소폭 진동하고 있다. 2019년 기준, IPTV의 가입자당 연간 방송매출액은 22.4만 원, 위성방송은 16.2만 원, MSO는 14.5만 원, 개별 SO는 13.6만 원 수준이다.

<표 2-8> 2019년 기준 매체별 방송사업매출액 등

구분	방송사업매출액 (억원)	가입자 (만)	가입자당 연간 방송사업매출액 (원)
IPTV(3개사)	38,566	1,721	224,029
위성(1개사)	5,485	338	162,213
MSO(5개사)	17,971	1,238	145,217
개별SO(9개사)	2,256	165	136,710

주) 자료 : 방송산업실태조사보고서

고정형 TV 텔레비전 등 기존 매체의 이용시간은 정체 혹은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모바일 매체의 이용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홈쇼핑의 E/N-Commerce 매출, 유료방송사업자의 VOD 매출 등 유료방송 관련 모바일 매출이 증대되고 있다. 실시간 방송서비스 기반의 매출은 정체되어있는 가운데 VoD 관련 매출은 급증하면서 유료방송 매출에서 양방향 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 증대하고 있으며 소위 N-Screen 이용의 보편화 등 미디어 간 연계 이용이 용이해지면서 양방향 서비스 이용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2020년 11월 기준 스마트폰 등의 디바이를 통하여 동영상 미디어를 상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개인화된 미디어 서비스 이용행태에서는 더욱 가중화 될 것이

다. 2020년 11월 당시 조사한 내용으로는 스마트폰에서 방송프로그램을 시청한 순이용자는 조사모집단의 69.69%인 2,338.39만 명에 이르렀고 월평균 방송프로그램 시청시간은 146.60분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3-3] 스마트폰 방송프로그램 시청 정도

주)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스마트폰 · PC 이용행태(2020년 11월 기준)

이러한 상황에서 지상파 방송의 광고매출액은 지속적으로 축소하고 있으며, 유료방송 전체가입자의 수는 정체되어가고 있다. VoD 매출 역시 감소하고 있어 방송통신발전기금은 중장기적으로 축소될 가능성이 농후한 상황이다.

[그림 2-4] 지상파 광고매출액과 유료방송 가입자 추이

〈지상파 광고매출액〉 (단위 : 억원)	〈유료방송 가입자 추이〉 (단위 : 만)
주)자료 : 2020 방송산업실태조사보고서	주) 자료 : 사업자 IR 자료

이와 같은 현상은 과거 특정 사업자가 점유하고 있는 채널의 소구력이 콘텐츠로 이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시청자 또는 이용자가 스마트 미디어 등을 통하여 각자의 취향에 맞는 콘텐츠를 적극 검색하고 소비하는 행태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이와 같은 논리로 방송법상의 인허가 체계를 살펴보면 채널사용사업자는 현행 방송법에서는 등록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목적이 있었으며 시장진입의 규제 정도를 낮추어 많은 사업자들이 방송생태계로 유입되는 정책 목적에 기인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여론의 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종편과 보도PP는 승인으로 시장진입을 허용하였다. 홈쇼핑사업자는 과거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요금인상 억제의 수단으로 송출수수료 수입을 설정하였으며, 방송의 과도한 상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승인 사항으로 규정하였다. 현재는 등록사업자인 일반PP의 방송사업 수익이 승인사업자의 수익을 상회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유료방송 채널 간 다양성 보장과 경쟁촉진을 위한 시장진입규제의 완화의 결과로 귀속된다고 볼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자생력 없는 영세 PP가 난립하고 대형 MPP 위주로 시장이 재편되면서 유료방송의 양극화 현상이 발생되었고 대형 MPP의 시장지배 현상이 일어났다.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이라는 규제 완화를 통하여 PP의 양적 증가를 이루어냈지만, 이들 PP들이 활동하는 시장 자체의 질적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하다고 평가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도 방송시장에서의 영향력이 현저히 커진 대형 MPP 등에 그에 적합한 공적책임에 대한 사항이 제시되어 2017년 사업 매출이 3,000억 원을 초과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 (PP)도 당시 방송발전기금의 징수대상에 포함시키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림 2-5] 국내 방송서비스시장 매출액 및 구성

주) 출처 : 2020 방송산업 실태 조사보고서

2. 신규 사업자의 출현 등

가. OTT 확산과 글로벌 동향

1) OTT 보급률

국내 방송 및 미디어 시장은 크게 변화하고 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5G 등의 미디어 기술 발전은 미디어 생태계를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으며, 모바일과 인터넷 중심의 미디어 이용을 고착화하고 국내외 미디어 시장의 경쟁을 심화시키고 있다. 특히, 모바일 중심의 미디어 소비 증가로 넷플릭스를 위시한 OTT 시장은 급성장하고 있다. OTT 서비스는 아시아, 미주 유럽 등을 중심으로 높은 수준의 보급률이 형성되고 있으며 시장 규모 역시 이에 따라 빠르게 커지고 있다.

<표 2-9> 전 세계 OTT 보급률

국가	보급률
영국	89.70%
캐나다	86.90%
미국	83.70%
스웨덴	81.30%
덴마크	80.70%
대한민국	54.90%

주) 자료 : Statista(2021.1월 기준)

2) 시장규모

보급률의 확대에서 볼 수 있듯이 시장 규모 역시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다. 2021년 매출 규모(약 1,717억 달러)는 2017년(약 845억 달러)에 비해 두 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 전 세계 OTT 시장규모(가입자요금, 광고 등)는 약 1,454억 달러(약 160조원) 수준이며 지속적인 성장이 전망되고 있다.

[그림 2-6] 글로벌 OTT 매출액 현황 및 전망

주) 자료: Statista(2021.1월 기준)

2016년 이후 유료방송(케이블이나 위성 등)의 매출은 감소하고 있으며, OTT 서비스 매출액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대비되는 양상을 보인다.

[그림 2-7] 글로벌 유료방송 및 OTT 매출 현황 및 전망

가입형 OTT

유료방송

주) 자료 : Omdia

3) 가입자수

OTT의 빠른 확산은 유료방송 가입자 감소와 동시에 나타나고 있으며, 동일시장의 서비스 간 대체현상이 발생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미국의 경우 2018년 OTT 가입규모가 유료방송 가입률(가구보급률)을 상회하고 2020년 1분기 유료방송의 코드커팅이 심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와 같이 미국은 OTT의 확산으로 케이블 등 유료방송 가입자의 이

탈현상이 현실화되었다 .

[그림 2-8] 미국 유료방송 및 OTT 서비스 가입율

주) 자료: Park Associates

미국은 특히 OTT 요금보다 유료방송의 요금이 높아 유료방송에서 OTT 서비스로 가입자 전환이 쉽고 빠르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기존 유료방송이 $44.99~$134.99인데 반해 넷플릭스, 디즈니+ 등은 $10 수준의 저렴한 요금을 구비하고 있다.

<표 2-10> 글로벌 OTT 서비스 현황 및 요금

서비스명	월 이용료
넷플릭스	$8.99 ~ $17.99
디즈니+	$6.99 ~ $12.99
훌루	$64.99
아마존 프라임	$5.99 ~ $12.99
애플TV+	$ 9.99

주) 자료 : 각사 홈페이지('21.1월 기준)

나. 국내현황

1) 서비스 이용행태

개인은 편성 시간에 고정된 실시간 시청에서 시청자가 원하는 시간에 VOD를 통해 시청

하거나 모바일을 통해 시청하는 이용행태가 증가하고 있다. 과거 고정형 TV가 가족단위 등의 시청행태였다면 개인화된 시청과 콘텐츠 소비로 변화가 이루어져왔다. 이와 더불어 동영상 포맷, 다양성, 콘텐츠 공급 증가, 멀티 플랫폼 환경 등으로 인해 개인 기호에 맞는 콘텐츠를 검색하고 소비·시청하는 행태가 증가함에 따라 니치(niche)마켓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전통적인 방송사업자가 행하는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의 시청은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실시간 채널의 브랜드가 약화되고 프라임 타임의 시청률 집중도 약화되고 있는데 기인한다. 즉, 시간편성과 채널 브랜드는 약화되고 비선형 콘텐츠 소비에 집중하는 현상이 일상화되고 있다.

VOD, 해외 콘텐츠 판매 매출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방송법 등의 규제를 회피하고 부가통신사업자로 진입할 수 있는 많은 OTT사업자들이 등장하여 전통적 방송사업사와 경쟁하고 있다. 전통적인 방송사업자는 방송광고 매출의 감소 등으로 OTT 사업자의 콘텐츠 차별화하기 위한 투자에 어려움이 있다. VOD를 공급하던 OTT사업자는 실시간 방송을 편성하는 등 스트리밍 기반의 저렴한 상품을 출시하고 있어 인허가 대상인 유료방송사업자와의 차이점이 모호해지고 있다.

네트워크와 단말의 제한점이 해소되면서 현재의 소비자는 시간과 장소의 제약이 없는 시청 행태가 당연시 되어왔으며 시청하는 시간, 장소, 방법, 동반자, 대상 등에 관한 제약이 사라지며 과거와는 다른 시청 행태를 보이게 되었다. 지금까지 시청자는 방송국의 편성시간에 맞춰 수동적으로 방송을 시청하는 게 일반적이었지만 네트워크와 디바이스에 상관없이 방송 콘텐츠를 시청할 수 있는 VOD서비스의 등장으로 인해 능동적인 시청 행태가 확산되어 가고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이용자가 원하는 시간에 맞춰 콘텐츠를 소비하는 시간 이동(Time Shift) 시청 행태가 자리잡아가고 있다.

다만, 모바일을 통한 개인화된 콘텐츠 시청에 익숙한 소비자들은 기존 미디어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기존의 방송서비스가 개인 맞춤형 콘텐츠를 추천하고 있으나 능동적시청 행태에 최적화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개인화된 시청 양태의 변화는 먼저 시청자가 개인 취향에 맞는 콘텐츠를 제공받기를 원하는데서 출발한다. 콘텐츠에 대한 기호는 대중적 취향에서 개인으로 분화되고 나의 기호에 맞는 동영상을 보고 싶다거나 다른 사람들이 많이 보는 동영상보다 나만 아는 동영상을 주로 보고 싶다는 경향이 동시에 나타난다.

2) 서비스이용 추세

TV를 보유한 가구의 유료방송 가입률은 2019년을 정점으로 하락(-5%)하고 있으며, 해외 OTT 서비스 이용률은 매년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IPTV 이외에 케이블이나 위성방송에서의 가입자 이탈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표 2-11> 유료방송 가입 가구 비율 (단위 :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유료방송 전체		94.8	94.5	95.7	97.2	92.2
케이블	아날로그	11.5	8.0	3.9	1.4	0.7
	디지털	45.6	44.8	48.2	48.1	43.4
위성방송		8.8	8.8	8.2	9.3	7.6
IPTV		37.0	41.7	41.8	47.0	53.0

주) TV 보유 가구 기준, 자료 : 2020 방송매체 이용 행태 조사

특히 네이버 TV, 아프리카 TV 등 국내 OTT 서비스 이용률 감소에 비해 유튜브, 넷플릭스 이용률은 급증하고 있다.

[그림 2-9]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이용률

주) 자료 : 2020 방송매체 이용 행태 조사

2019년 기준 유료방송 VoD 유료 결제율은 하락하고 있으며 OTT 유료결제는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가입자당 유료방송 VOD 결제 금액은 2018년 월평균 10,980원에서 2019년 7260원으로 하락하였다. 반면 OTT 유료 이용경험률은 2017년 5.6%에서 2019년 14.9%로 증가하였다.

[그림 2-10] 유료방송 및 OTT 서비스 이용률과 유료결제 이용률

〈유료방송 및 OTT 서비스 이용율(%)〉 〈유료방송 및 OTT 유료결제 이용율(%)〉

* 최근 일주일간 이용 경험 * VOD, OTT 이용자 중 유료 이용 경험

자료 : 2020 방송매체 이용 행태 조사

3) 서비스 유형

과거 케이블TV 사업자들은 네트워크와 단말기를 통한 고착효과(Lock in Effect)를 누렸지만, 기술의 발전으로 이러한 요건들이 점차 부차적인 것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즉 유무선 네트워크 향상으로 동영상을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며 스마트폰, 태블릿, 스마트TV, 게임콘솔 등 이용 단말이 증가하고 있어 이를 가속화하고 있다.

<표 2-12> 국내에서 이용가능한 OTT 서비스 현황

구분	이용료	특징
쿠팡플레이	2,900원(4명)	빠른배송, 무료반품
넷플릭스	9,500원(1명)~14,500원(4명)	다수의 오리지날 시리즈
웨이브	7,900원(1명)~13,900(4명)	지상파 드라마, 예능
티빙	7,900원(1명)~13,900(4명)	JTBC, CJ계열 콘텐츠
아마존프라임	12.99달러	빠른배송, 음악도서 무료
왓차	최저가격 7,900원	

자료 : https://ebadak.news/2020/12/27/coupang-play/ 등

OTT는 ①범용인터넷 망을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받거나(OTT 사업자와 직접 계약)[20], ②

②IPTV 등 유료방송 사업자의 셉톱박스를 통하는[21] 등 다양한 경로로 서비tm를 제공받을 수 있다. 현재 KT와 LGU+는 넷플릭스 이용요금을 9,500~14,500원으로 책정하고 IPTV 요금에 합산하여 청구하고 있으며, SKB는 넷플릭스를 제공하지 않고 자체 유사 OTT인 OCEAN 서비스를 제공하고 WAVVE와 결합상품을 내놓고 있다.

[그림 2-11] OTT 서비스 유형

낮은 진입 장벽으로 인해 수많은 OTT 사업자들이 등장하면서, VOD만으로는 차별화가 점점 더 어려워지게 되었다. 이에 OTT 사업자들은 실시간 방송을 편성하고 있으며 주사업은 물류사업 등과 같은 이종산업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자리잡고 있다. 국내에서는 쿠팡TV가 이에 해당된다. 넷플릭스의 시장점유가 확대되는 상황 속에서 VOD 중심의 OTT 이외에 유료방송과 결합하여 대형 TV로 시청할 수 있는 시장으로 침투하고 있다. 기존에는 유료방송 업계는 OTT로부터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소위 스키니번들(Skinny Bundle)로 불리는 새로운 상품을 선보였다. 스키니는 채널의 수를 획기적으로 줄여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기존에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는 이코노미 채널 상품과의 차이는 스트리밍 방식을 이용한다는 점이다. 즉 어떠한 네트워크를 사용하든 어떠한 디바이스를 사용하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실시간 방송을 제공하는 OTT와 유사해지는 것이다. 위성방송사인 디시 네트워크(Dish Networks)의 슬링TV(Sling TV)와 디렉TV(DirecTV)의 디렉TV 나우(DirecTV Now), 케이블방송사인 컴캐스트의 스트림TV(Stream TV) 등이 이러한 서비스들이다.

수많은 OTT 사업자의 등장과 유료방송사들의 스키니번들이 출시되면서 서비스의 형태가 수렴하는 양상을 보여 왔다. 서비스가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되면서, 100개 이하의 실시간 채널과 VOD를 제공하는 상품이 하나의 표준 상품으로 주목받은 바 있다.

방송시장에서는 시청자들의 이용행태에 맞추어 콘텐츠 차별화를 위해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넷플릭스의 오리지널 콘텐츠의 성공이 이에 해당된다. 또한 콘텐츠 독점 이용권을 확보하여 시청자를 유인하는 전략을 구상하기도 하는데 특정 사업자가 모든 콘텐츠를 독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경쟁사 또한 콘텐츠의 독점권을 확보 경쟁을 하기 때문에 종국에는 독점력의 희석과 높은 수준의 콘텐츠 가격만 형성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시청자들의 트렌드 등을 고려하여 사업자들은 고가의 콘텐츠를 독점하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니치 콘텐츠를 확보하여 차별화를 추구하고 있다. 즉 콘텐츠 시장의 롱테일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모바일을 통한 개인 시청이 증가하면서 대중적인 콘텐츠보다는 개인화된 콘텐츠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어 니치 콘텐츠 확보를 위한 전략이 강화되고 있다. 이와 같은 미디어 시장 변화, 이용자 행태 변화에 따라 OTT 서비스는 기존 유료방송과 결합하거나 다양한 디바이스를 통하여 국내시장에서 확산될 전망이다.

4) 사업자 간 인수합병

또한 국내외에서는 사업자 간 인수합병이 미디어 시장의 변화를 촉진하고 지형변화를 유발하는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 통신사업자인 버라이즌은 2015년 온라인 광고 플랫폼 및 온라인 뉴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AOL을 인수한고, 미국 통신사업자인 AT&T 또한 위성방송 사업자인 Direct-TV를 인수했고, 2016년 10월 영화사, 케이블 채널, 출판사를 보유한 종합 콘텐츠 기업인 타임워너의 인수합병을 발표, 2018년에 합병했다.

국내에서도 LGU+와 (구)CJ헬로비전, SKB와 티브로드가 합병해 각각의 전송망을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하고 있으며, 가입자확보와 함께 방송통신상품 결합판매를 통하여 시장점유율을 증대하고 있다. OTT사업자의 시장확산으로 기존 유료 방송을 가입을 해지하거나(Cord Cutting) 저렴한 요금제로 갈아타는 현상(Cord Shaving)이 발생하고 있으며 OTT 사업자들은 자체적으로 제작한 콘텐츠를 자사의 플랫폼, 유료방송사업자와 연계하여 서비스 인터페이스 상에서의 공급하고 수익분배를 꾀하고 있다.

시장의 역학 관계에 따른 방송시장이 변화는 기술 발전 및 소비자 트렌드 변화에 따라 급속하게 빨라지고 있다. 기존 방송시장에서는 전송경로(지상파, HFC망 등)에 종속된 서비스와 STB등의 단말을 이용해야만 했다. 그러나 기술적 변화는 네트워크 속도 향상과 단말기 성능 향상을 통하여 범용인터넷망 등을 통하여 QoS(Quality of Service)가 보장되는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즉, 전용 전용망이 아닌 범용인터넷망을 통해서도 원활한 방송서비스 제공과 소비가 가능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시장의 변화를 반영하여 관련 법제도 역시 변해야 할 것이다.

제3장 사업자 부담금에 국내외 현황

제1절 부담금 법제도

1. 개요

부담금이란 특정 공익사업으로부터 특별한 이익을 얻는 자에 대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키기 위하여 과하는 공법상의 금전급부의무를 말한다. 경비의 일부를 부담시키는 경우를 특히 분담금이라고도 한다.[22] 전통적으로 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에 충당하기 위해 국가나 공공단체 등이 사업에 드는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그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련이 있는 자에게 부담시키는 공법상 금전급부의무로 이해되어왔다. 하지만 최근 특정한 공익사업에 한정하지 않고 더 넓은 의미의 공익사업을 위해 공용부담이 행해지는 경우가 많아졌다. 부담금관리기본법은 제2조에서 부담금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행정권한을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법인의 장 등 법률에 의하여 금전적 부담의 부과권한이 부여된 자가 분담금, 부과금, 예치금, 기여금 그 밖의 명칭에 불구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외의 금전지급의무"라 정의하고 있다. 학계에서는 특정의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시키기 위하여 과하는 금전지급의무(정재호 외, 2004), 정부 등 공적기관 서비스 공급의 대가로 사용자나 수익자가 직접 지불하거나 해당 서비스와 연관이 깊은 재화, 서비스 사용시 간접적 형태로 대가를 지불하는 금액(배준호, 2005), 수익자나 비용발생자를 특정하여 직간접적 부담을 청구할 수 있을 때 널리 사용되는 개념으로 보고 있다(배준호, 2005).

부담금은 금전급부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에서 조세와 비슷하며, 그와 구분되는 차이에 따라 부담금 부과 요건을 구분할 수 있다. 조세는 일반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국민으로부터 무상으로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재화"라고 정의될 수 있으며, 일반재정수입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적 공익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을

22) 圖說 法律用語辭典 / 2017.02.15 / 법전출판사

마련한다는 점에서 부담금과 그 성격이 유사하다고 볼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은 차이점을 갖는다.

<표 3-1> 조세와 부담금의 차이점

구분	조세	부담금
목 적	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수입	특정한공익사업의 경비에 충당
부과대상	특정사업과 관련 없는 일반국민 또는 주민에게 부과	당해 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에게 부과
부과기준	담세능력을 기준으로 부과	사업소요 경비, 사업과의 관계 등을 기준으로 부과

주) 자료:「부담금종합운용보고서 」 재구성

조세 중에서 목적세는 특정한 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한 경비라는 점에서 부담금과 그 성질이 유사하다. 하지만 부담금은 그 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자에게만 부담되는 반면, 목적세는 사업과 관련이 없는 일반 국민에 대하여 그 납세능력에 따라 부과된다는 점에서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참고] OECD 부담금에 관한 기준

OECD의 조세/비조세 판단기준에 의하면 부담금(Fees, user charges and license fees)이 다음의 경우는 조세로 구분하고 있다.

- 부담금이 서비스에 소요되는 실제비용을 크게 초과하는 경우(where the charge greatly exceeds the cost of providing the service;)
- 부담금 납부자가 수혜자가 아닌 경우(where the payer of the levy is not the receiver of the benefit)
- 정부가 권한을 부담자에게 허가하거나 승인하였으나 , 그 반대급부로 특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where government is not providing a specific service in return for the levy which it receives even though a licence may be issued to the payer)
- 서비스의 수혜가 부담금 납부자에게 한정되나, 각 개인이 지불금액에 비례하는(portion) 서비스를 받지 못한 경우(where benefits are received only by those paying the levy but the benefits received by each individual are not necessarily in proportion to his payments)

벌금(Fines, Penalties)은 세금과 연관된 벌금의 경우만 조세로 간주되며, 그 외의 벌금(예: 주차벌금)은 비조세로 간주하고 있다.[23] 석유나 석탄과 같은 자원 추출이나 개발권과

같은 로열티(royalties)에 대한 비용지불은 국가나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자산으로부터 나오는 재산소득이므로 비조세 수입으로 간주하고 있다. OECD에서 제시한 기준으로 구분이 어려운 경우, 조세 및 비조세수입의 구분은 개별국가의 입장을 고려하기보다는 OECD 국가들의 관행을 기준으로 구분하는 것이 원칙임을 제시하고 있다. 구분이 힘든 주요 수수료 및 부담금의 리스트와 이에 대한 조세 및 비조세수입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부담금이 조세와 비조세수입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경우 이를 분류하는 것이 원칙이며, 실질적으로 동시에 기록되는 비조세수입으로부터 조세수입을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다. 세입의 대부분이 비조세수입일 경우, 전체 세입을 비조세수입으로 간주한다.

구분	주요내용
비조세	법정수수료 (court fee), 운전면허자격 수수료, 항구이용료, 여권 발급 수수료, 방송 수신료 등
조세	영화배급, 사냥, 낚시, 사격 등의 활동에 대한 허가, 오락 및 도박활동 제공, 주류나 담배판매, 애완견 소유, 오토바이나 총기 소지에 대한 허가, 석유 및 가스 추출 및 개발에 관한 세금(severance taxes)

주) 자료: OECD, Revenue Statistics OECD, 2007

2. 국내 부담금운용평가단의 부담금에 관한 평가 기준

2002년부터 시행된 부담금관리기본법에 의해 기획재정부에서는 부담금운용실태의 점검과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평가는 기획재정부의 부담금운용평가단에서 시행하고 있다[24]. 부담금운용평가단은 민간전문가 위주로 구성되어 제도의 개선에 대한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를 도모하며, 부담금 제도에 대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연구와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평가단은 부담금 관리제도와 개별 부담금에 대한 평가를 하고, 부담금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의 마련을 검토한 바 있다.

부담금운용평가단은 부담금 평가에 대한 기본원칙을 정하고 있다. 이 기본원칙에 대한

내용을 살피면, 우선 부담금은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범위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면서 부과가 되어야 한다. 또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동일한 대상에 대해 이중으로 부과하여서는 안된다.

부담금의 신설에 대해 심사할 때 고려할 내용에 대해 부담금 관리법은 제6조에서 ① 부담금의 신설이 명확한 목적을 가질 것, ② 부담금의 부과요건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을 것 ③ 부담금 재원조성의 필요성과 사용목적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각각 갖추었을 것, ④ 기존의 부담금과 중복되지 않을 것, ⑤ 부담금의 부과가 조세보다 적절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부담금운용평가단은 위에 제시된 요건과 부과실태 및 사용내용 등 부담금 운용의 실제 내용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에 대하여 평가하며 ① 부과의 타당성 ② 유사부담금의 존재여부 ③ 부과·징수 실적 ④ 부과요율 수준의 적정성 ⑤ 부담금 부과요건의 법제화 여부 등 5가지 기준에 의하고 있다.

여기서 부담금은 법률에 의하여 금전적 부담의 부과권한이 부여된 자[25]가 그 명칭[26]에 불구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로 정의되는 바, 부과의 타당성은 재원조성의 필요성을 우선 판단하여야 한다. 재원조성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사업을 일반회계 사업이 아닌 특정한 부담금 수입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는 특정한 사업을 수행함에 따라 나타나는 편익의 귀속, 특정한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는 원인, 그리고 특정한 사업을 통해서 유인 또는 억제하고자 하는 행위와 부담금의 연계성 여부와 관련하여 판단할 수 있다. 대부분의 부담금은 특정의 기금이나 특별회계에 귀속되어 특정사업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되는데, 이 경우 특정사업과의 관련성이 일부 인정된다고 보고 있다.

부담금은 특정의 공익사업과 직접적인 연계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조세에 비해 수익자 또는 원인자 부담원칙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적용되고 있다. 부담금의 근거가 되는 특정

25)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행정권한을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법인의 장 등

26) 분담금, 부과금, 예치금, 기여금 등

공익사업의 목적과 범위의 구체성에 대한 검토를 통해 조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부담금에 대해서는 조세로 전환하는 방향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유사부담금의 존재 여부는 부담금관리기본법 제5조에 의하면 부담금 부과의 기본원칙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동일한 부과대상에 대하여 이중의 부담금이 부과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근거로 이중과세 금지의 원칙과 같은 차원에서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부과징수 실적은 부담금제도를 도입한 후 일정기간 이상 전혀 부과 및 징수실적이 없거나, 지극히 미미한 경우에는 제도의 실효성이 발휘되지 아니하는 경우이므로 비록 그 논리적 타당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제도를 계속적으로 존치할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한 검증이 있어야 한다고 제언하고 있다.

부과요율 수준의 적정성에 관하여서는 부담금관리기본법 제5조에 근거하여 부담금은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공정성 및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부과되어야 한다. 그리고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른 부담금의 경우 그 수익의 범위 내에서,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른 경우 당해 대상자가 유발시킨 비용의 범위 내에서, 그리고 특정사업의 재원조달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사업의 재원소요 등을 고려하여 부담금을 부담하도록 요율수준이 설정되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부담금 부과요건의 법제화 여부에 관해 부담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의하면 부담금부과의 근거가 되는 개별 법률에는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실체, 설치목적, 부과요건, 산정기준, 산정방법, 부과요율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다만 이들 부과요건의 세부적인 내용은 당해 법률이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바에 따라 하위 법규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부담금의 법제화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는 유사한 성격의 부담금에 관하여는 부과요건 등을 정형화하는 표준적인 입법모델을 개발하여야 하며 단기적으로는 부담금제도를 규정한 관련법령을 검토 및 분석하여 부과요건 등에 관하여 법령상의 근거가 결여되어 있거나 미약한 부담금제도를 발굴하여 이의 개선을 도모하는 한편 부과절차의 민주성과 투명성의 제고를 위하여 징수 절차, 이의제기절차 등을 정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제언하고 있다.

3. 헌법재판소의 부담금에 관한 법리 기조

가. 개요

헌법재판소는 98헌가1 결정[27]을 통해 특별부담금의 존재와 그 헌법적 한계에 대해 언급한 이후, 부담금[28]에 대한 의의와 헌법적 정당화 요건에 관한 법리를 발전시켜왔다(이대근, 2009). 헌법재판소는 부담금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조세와 관계에서 어디까지나 예외로 인정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어떤 공적과제에 대한 재정조달을 조세로 할 것인지, 아니면 부담금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 입법자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하였다.[29] 이때 그 부담금이 합헌인지에 대한 판단기준으로 부담금 납부의무자가 재정조달의 대상인 공적 과제에 대해 일반 국민에 비해 '특별히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는 지를 제시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나타난 분담금의 헌법적 허용한계는 집단적 동일성, 객관적 근접성, 집단적 책임성, 집단적 효용성이다. 또한 부담금이 장기적으로 유지되는 경우 그 징수의 타당성이나 적정성이 입법자에 의해 지속적으로 심사될 것을 요구한다.

<표 3-3> 헌법재판소 판결을 통한 기금의 성격 재정립

구분	기금	비고
세금여부	조세외적 성격을 가진 특별부담금	
기능	정책목표 달성 유도 및 조정, 재정충당	객관적근접성
부과대상	특정집단(특별히객관적으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집단)에 국한	집단의동질성
헌법적 정당화 요건	헌법 제37조 제2항: 과잉금지의 원칙(법률유보 조항) 헌법 제11조: 평등의 원칙	
사용 및 관리	특정과제 수행을 위해 지출 일반 조세 외 별도의 관리	집단적효용성
책임	특정집단으로서 관련된 공익적 과제 등에 관한 집단적 책임	집단적책임성

헌법재판소는 “일반적으로 “부담금”은 인적 공용부담의 일종으로서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특정한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시키기 위하여 과하는 금전지급의무를 말하고, 공익사업과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에 따라 수익자부담금·원인자부담금 및 손상자부담금으로 나누어지고, 이러한 전통적인 공용부담제도는 일면에서는 공익상의 수요충족의 관점에서, 또 다른 면에서 공익과 사익의 조화를 통한 부담의 합리적 조정이라는 관점에서 인정되는 것”[30]이라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부담금의 합헌성을 위해서는 공익과 사익의 조화를 통한 부담의 합리적 조정이 중요하며, 사익과 공익의 균형성의 판단은 수익자부담금·원인자부담금 및 손상자부담금의 유형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표 3-4> 비용부담 형태에 따른 부담금 유형

부담금 유형	내용
수익자부담금	공익사업으로부터 특별한 이익을 받는 자에게 특별한 이익의 범위 안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시키는 형태
원인자부담금	특정인의 행위가 공적인 비용을 유발한 경우 그 원인제공자인 특정인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형태
손상자부담금	공적인 시설에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해당 시설의 유지, 수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시키는 형태

헌법재판소는 부담금의 성격이 정책실현목적을 가진 경우 요건들 중 일부가 완화될 수 있다고 하여 부담금의 분류별로 판단기준이 달라질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부담금을 재정조달목적 부담금과 정책실현목적 부담금으로 구분하여 판단하고 있으며, 정책실현목적 부담금은 재정조달의 목적과 함께 특정한 사회·경제정책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부담금을 부과하는 유형이다.

<표 3-5> 목적에 따른 부담금 유형

부담금의 유형		내용
재정조달목적 부담금		순수하게 재정조달 목적만 가지는 것
정책실현목적 부담금		부담금의 부과 자체로 추구되는 특정한 사회·경제정책 실현의 목적을 가지는 것
	유도적 부담금	국민의 행위를 일정한 정책적 방향으로 유도하는 수단
	조정적 부담금	공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과 그것을 이행한 사람 사이 혹은 공공의 출연(出捐)으로부터 특별한 이익을 얻은 사람과 그 외의 사람 사이에 발생하는 형평성 문제를 조정

나. 재정조달 목적 부담금에 대한 위헌성 판단

1) 조세와의 유사성

재정조달을 위하여 특정한 반대급부 없이 부과되는 재정조달목적 부담금은 조세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특정한 반대급부 없이 국민에게 재산을 출연할 부담을 지우는 데 대해 국가가 재산을 보전하고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세법률주의[31]의 헌법적 목적은 재정조달목적 부담금에서도 유지되어야 한다. 즉, 자의적 조세부과 방지를 위해 엄격하게 법률로 요건과 대상 등을 정하도록 한 조세법률주의와 같이 재정조달목적 부담금 역시 법에 근거를 두고 그 요건과 대상 등에 대해 명확히 규정을 두어야 한다. 재정조달목적 부담금이 실질적으로 국가 등의 일반 과제에 대해 재정조달을 목표로 하는 것이어서 조세적 목적을 띄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조세저항이나 이중과세 문제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부담금의 형식을 남용하는 것은 조세 중심으로 재정을 조달하는 헌법상 기본적 재정질서가 교란될 위험이 있으며, 조세에 대한 헌법적 통제장치가 무너질 위험이 크다.

또한 헌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과세는 개인의 담세능력에 상응하여 공정하고 평등하게 이루어져야 한다(조세평등주의). 이러한 원칙은 넓게는 공과금 부담의 형평성을 기하는데까지 확장할 수 있으며, 부담금에도 역시 이러한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평등원칙의 판단에 있어 부담금의 부과 대상인 특별한 집단이 일반 국민과 달리 부담금을 부

과받는 것에 대한 정당성 판단이 중요하다 할 수 있다.

그리고 부담금 수입은 기금이나 특별회계예산에 편입되기 때문에 재정에 대한 국회의 민주적 통제기능을 상대적으로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대해서도 중대한 예외이다. 이에 따라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떨어뜨릴 수 있으며, 칸막이식 재정 운용을 통해 재정운용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국민에게 필요한 이상으로 공과금 부담을 지우는 결과를 가져올 우려가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이러한 특징들을 볼 때 헌법적인 정당화를 위해서 우선적인 판단요소는 부담금은 어디까지나 조세에 대해 어디까지나 예외적으로만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입법자들에게 이를 조세로 할지 부담금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자유로운 선택권을 부여할 수는 없다. 그 목적이 일반적 과제를 수행하는 데 있다면 이는 반드시 조세의 형식으로 해야 한다.

2) 특별히 밀접한 관련성

부담금 납부의무자는 재정조달 대상인 공적 과제에 대해 일반국민에 비해 '특별히 밀접한 관련성'을 가져야 한다. 이는 부담금 납부의무자에게 특별한 재정책임이 인정되어야 함을 의미하며, 부담금 수입이 납부의무자 집단에게 유용하게 사용될 때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일반인과 구별되는 동질성을 지니어 특정집단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만 부과되어야 하고(집단의 동질성), 특별부담금의 부과를 통하여 수행하고자 하는 특정한 경제적·사회적 과제와 특별히 객관적으로 밀접한 관련성이 있어야 하고(객관적 근접성), 그리하여 그러한 과제의 수행에 관하여 조세외적 부담을 져야 할 책임이 인정될만한 집단에 대해서만 부과되어야 할 것이며(집단적 책임성), 특별부담금의 수입이 특별부담금 납부의무자의 집단적 이익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집단적 효용성).[32]

집단의 동질성은 특별부담금이 국민들 사이의 공과금 부담의 형평성 내지 조세평등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 일반인과 구별되는 동질성을 지닌 특정집단에게만 부과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의무자 집단이 동질적 요소에 의하여 일반 국민들과 구별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내부의 납부의무자들 사이에서도 동질성의 정도가 서로 유사하게 유지되

32) 헌재 1998. 12. 24. 98헌가1 결정.

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객관적 근접성은 특별부담금의 부과를 통하여 수행하고자 하는 특정한 경제적·사회적 과제와 특별히 객관적으로 밀접한 관련성이 있어야 하고 ,공적 과제의 내용이 특수하게 설정되었다면 그 내용과 연결되는 납부의무자 집단 또한 그에 맞게 합리적으로 설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집단적 책임성은 추구하는 공적 과제의 수행에 관하여 조세외적으로 부담을 져야 할 책임이 인정될만한 집단에 대해서만 부과하고 공적 과제 수행에 책임 있는 집단을 합리적으로 선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집단적 효용성은 특별부담금의 수입이 특별부담금 납부의무자의 집단적 이익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부담금의 개념 요소에 반대급부의 보장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엄격하게 요구하지 않을 수는 있으며, 비록 간접적 수혜라 하더라도 효용성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결정하였다.

3) 부담금의 위헌성 판단

부담금은 금전급부의무를 강제하는 것으로 본질적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에 대한 제한이다. 이에 대한 위헌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제한이 헌법 제37조제2항의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않아야 하며, 특정인에 대한 금전납부의무 부과가 헌법 제11조에서 보장하는 평등의 원칙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 역시 위헌성 판단의 기준이 된다.

부담금은 행정주체가 사인에 대해 행하는 권력적 행정행위로 국민의 재산권 침해와 직결되므로 엄격한 법률유보의 원칙이 적용된다. 부담금은 그 설치 목적과 대상, 징수주체, 부과요건, 산정기준, 산정방법, 부과요율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또한 기본권 침해의 일반 원칙에 따라 수단의 적절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균형성을 갖추어야 한다. 특히 최소침해원칙과 관련하여 수익자부담금의 경우는 수익을 한도로, 원인자 부담금인 경우는 원인자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사비 등을 한도로, 손실자 부담금의 경우 그 소요비용을 한도로 부담금 부과가 이루어져야 한다.

다. 헌재의 결정 사례 주요내용

① 헌재 1999. 10. 21. 97헌바84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금[33], 합헌

카지노사업자는 공통의 조건이나 이익상태에 의하여 일반인이나 다른 집단과 구별되는 사회적으로 동질성을 가지는 특정집단이고 납부금의 부과를 통하여 추구되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조성이나 관광사업의 발전과 객관적으로 밀접한 관련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다. 이와 같은 객관적인 밀접성으로 인하여 카지노사업자는 조세 이외의 공과금인 이 사건 납부금의 부과를 통하여 수행되는 과제에 대하여 특별한 집단적 책임을 진다고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카지노사업자의 납부금은 국가의 일반세입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관광진흥개발기금에 편입되어 특정한 용도를 위하여만 사용되며, 관광진흥개발기금법 및 기금관리기본법상 그 기금운용에 대하여 국회의 통제를 비롯한 많은 규제가 가해지고 있다.

카지노 납부금은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조성되어 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쓰이게 되고, 이로 인하여 외국인 관광객의 수가 증가하면 카지노업의 수익도 따라서 증가할 것이므로, 그 수입이 카지노사업자의 집단적 이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사용되는 것이 명백하다고 하여 그 합헌성을 인정하였다.

② 헌재 2008. 2. 28. 2006헌바70 텔레비전방송수신료 , 합헌

탤레비전방송수신료에 대해 이를 부담금으로 보면서, 부담금이 헌법적으로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부담금을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공적 과제에 대하여 일반국민에 비해 특별히 밀접한 관련성을 가져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수신료의 납부의무자는 텔레비전 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수상기를 소지하고 있는 자들로서 일반인들과 구별되는 집단적 동질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으며, 공영방송의 시청, 방송문화 활동의 직·간접적인 수혜자라는 점에서 객관적으로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이러한 공

33) 헌재 2003. 1. 30. 2002헌바5 결정에서는 이 사건명을 카지노사업자납부금으로 명명하고 있다.

적 과제 실현에 있어 조세외적 부담을 져야할 집단적 책임이 인정되고, 수신료 수입이 결국 수신료 납부의무자들의 집단적 이익을 위하여 사용된다 할 것이므로 수신료 납부의무자들과 수신료를 통해 달성하려는 특별한 공적 과제 사이에는 특별히 밀접한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③ 헌재 2008. 11. 27. 2007헌마860 영화상영관 입장권에 대한 부과금, 합헌

영화상영관 입장권에 대한 부과금에 대해 재판관 4인의 기각의견은 재산권 제한의 방법의 적절성을 심사하면서 그것이 재정조달목적 부담금으로서 헌법적으로 허용되는 것이어야 한다고 하고 요건들을 모두 판단하여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절한 수단이라는 결론에 이르고 있다.

한편, 재판관 5인의 위헌의견도 기본적으로는 위 4인의 기각의견과 같은 논리 구조를 취하였지만, 비례성 심사를 함에 있어 수단의 적합성에서 다른 판단을 하였다. 영화상영관 관람객을 대상으로 이 사건 부과금을 부과한 것이 적절한 방법이 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재정조달목적 부담금의 헌법적 허용한계 내에 있어야 한다고 하면서, 이 사건 부과금의 부과는 영화 예술의 진흥이라는 국가의 문화적 책무의 수행과 한국영화산업의 발전이라는 산업적·경제적인 정책의 추구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바, 이는 영화라는 단일 장르에 대한 지원이라는 특별한 정책적 필요에 의한 것으로서 조세의 경우와 달리 특정의 관련된 집단으로부터만 그 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 특수한 공적 과제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하지만 특별히 밀접한 관련성의 판단에서 ① 집단적 동질성 ② 객관적 근접성 ③ 집단적 책임성 ④ 집단적 효용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았다.

④ 헌재 2009. 4. 30. 2006헌마603 등 예금보험공사 특별기여금, 합헌

특별기여금이라는 부담금의 납부의무자는 예금보험공사의 부보금융기관들로서 IMF 외환위기 당시 공적자금의 투입으로 금융시스템이 안정됨에 따른 직·간접적인 혜택을 누린 자들이므로 일반인이나 다른 집단과 구별되는 집단적 동질성을 가지고 있고다고 보았다. 또한 부보금융기관들은 외환위기 당시 예금보험금 등의 명목으로 금융기관들에 투입된 공

적자금의 회수라는 특정한 경제적·사회적 공적 과제와 객관적으로 밀접한 관련성이 있으며, 이러한 공적과제의 실현에 있어 조세외적 부담을 져야할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이 사건 상환기금은 IMF 금융위기 해결을 위해 금융권에 투입된 공적자금의 상환을 위한 것이므로 이미 납부의무자들의 집단적 이익을 위하여 사용되었다고도 볼 수 있고 이 사건 특별기여금의 납부의무자와 이 부담금을 통해 달성하려는 특별한 공적과제 사이에는 '특별히 밀접한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고 보아 수단의 적합성을 인정하였다.

⑤ 헌재 2005. 3. 31. 2003헌가20 학교용지부담금 1차, 위헌

신규 주택의 수분양자들이 공익사업에 대하여 일반 국민들에 비하여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신규 주택의 수분양자들에게만 학교용지확보를 위한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에 해당하여 위헌으로 결정된 바 있다.

⑥ 헌재 2008. 9. 25. 2007헌가9 학교용지부담금 2차, 합헌[34]

개발사업자들은 '개발사업지역에서 100가구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개발하여 분양하거나 공동주택을 건설하여 분양하여 학교용지확보의 필요성을 야기시켰다는 점'에서 형식적으로 일반 국민과 구별되는 동질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학교신설의 필요성을 야기하지 아니하는 개발사업자는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특례법 제5조 제4항) 납부의무자들은 내부적으로도 위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동일한 정도의 동질적인 특정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를 통하여 수행하고자 하는 과제는 '학교용지의 확보 및 학교의 증축'으로 개발사업자는 개발 사업을 통

34) 부담금 자체에 대해서는 합헌 판결을 하였으나, 학교용지를 확보하여 기부채납한 자에 대하여만 이중의 부담을 방지할 수 있는 필요적 면제 규정을 두고, 학교건물을 증축하여 기부채납한 자에 대해서는 이를 위한 일체의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로 학교건물을 증축하여 기부채납한 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하면서 헌법불합치 판결을 하였다.

해서 이익을 창출함과 동시에 학교 신설의 필요성을 야기한 자로 학교용지확보라는 공적 과제와 객관적으로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개발사업 지역에서의 학교신설 비용은 교육수요의 충족을 위한 비용의 성격과 함께 개발사업 지역의 기반을 형성하는 비용으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발사업자는 학교용지확보라는 과제의 달성에 관하여 조세외적으로 부담을 져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또한 자녀교육에 대한 열의가 남다른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학교의 신설이 담보될 경우 개발사업자는 분양에 있어서의 편의와 분양가격 상승이라는 이익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이고 따라서 개정 학교용지부담금제도는 일정부분 납부의무자의 집단적 이익에도 기여한다고 보았다.[35]

⑦ 헌재 1998. 12. 24. 98헌가1 수질개선부담금 1차, 합헌

먹는샘물제조업자들은 먹는샘물을 제조·판매한다는 점에서 일반인과 구별되는 동질성을 지닌 특정한 사회적 집단이고, 부담금 징수로 추구하는 지하수자원 보전 및 먹는물, 특히 수돗물 수질개선이라는 목적과 먹는샘물제조·판매행위는 긴밀한 관계에 놓여 있기 때문에 특별히 먹는샘물제조업자라는 집단을 선정하여 수질개선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지하수를 이용하는 다른 집단이나 일반인과는 달리 이들은 수돗물과 대체적·경쟁적 관계에 놓여 있는 먹는샘물을 제조·판매함으로 인하여 지하수 보전 및 수돗물 우선 정책에 대한 특별한 위험을 야기하는 집단이고 그만큼 부담금이라는 재정적 부담을 지울 수 있을 만한 특별한 관계에 있는 것이라고 하여 부담금의 부과를 적정한 수단으로 판시하였다.

⑧ 헌재 2003. 1. 30. 2002헌바5 국외여행자납부금 , 합헌

‘ 내국인 국외여행자 ’ 는 공통의 조건이나 이익상태 등에 의하여 일반인이나 다른 집단

35) 2인의 반대의견은 평등원칙 위반 여부에서 (가) 특별한 공익사업인지 여부 (나) 특별히 밀접한 관련성 여부에 대해 위헌의견을 피력하였다.

과 구별되는 사회적으로 동질성을 가지는 특정 집단으로서 이 사건 납부금의 부과를 통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공익적 과제 등에 관하여 집단적 책임이 있을 뿐만 아니라, 기금의 운용을 통한 관광시설 및 교통수단의 개선 등 국내 관광사업의 발전과도 객관적인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이 사건 납부금의 부과를 통하여 관광수지적자의 발생을 억제하면서 국내관광사업의 활성화를 유도함과 동시에 일정한 재정적 부담을 지울 수 있을 만한 특별한 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결정하였다.

당시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매년 국외여행을 하는 사람의 비율은 20%를 넘지 않고, 따라서 상대적으로 소수(少數)인 내국인 국외여행자가 우리나라의 관광수지적자를 유발하는 데에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고 하여 수단의 적합성을 인정하고 있다.[36]

⑨ 헌재 2003. 7. 24. 2001헌바96 장애인 고용부담금, 합헌

장애인 고용부담금에 대해 부담금이 부과되는 집단은 일반국민이 아닌 특정집단인 "사업주"이며, 그 목적이 장애인 고용 촉진에 있고, 100% 장애인고용촉진기금으로 귀속되며 이 기금이 고용지원금, 장려금 그리고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을 위한 부담금은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설·장비의 설치·수리에 필요한 비용과 융자·지원 등에 지출되고 있어 수단의 적절성이 있으며, 장애인고용의 경제적 부담을 조정하고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을 위해 사용되고 국가의 일반적 재정수입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므로 방법의 적정성도 인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

36) 다만 4인의 반대의견은 헌재 1998. 12. 24. 98헌가1 결정과 헌재 1999. 10. 21. 97헌바84 결정의 설시를 원용하면서 "내국인 국외여행자들을 과연 일반인과 구별되고 동질성을 지니는 특정 집단으로 볼 수 있는지는 의문"이고, "내국인 국외여행자들 사이에 특별히 객관적으로 밀접한 관련성을 인정하기는 어려우며", "이 사건 기금은 특별히 내국인 국외여행자들의 집단적 효용을 위해 사용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내국인 국외여행자들에게 부과되는 이 사건 납부금은 국민들 사이의 공과금 부담의 형평성을 위해 갖추어야 할 특별부담금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된다"고 보아 비례원칙 중 수단의 적합성 심사가 아니라 별도의 특별부담금의 요건 심사를 통해 이 사건 법률조항을 위헌으로 파악하고 있다.

⑩ 헌재 2007. 12. 27. 2006헌바25 해양환경개선부담금 , 합헌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의 납부의무자는 폐기물해양배출업자들로서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폐기물 해양배출을 예외적으로 허용받아 이를 영업으로 하면서 그 이득을 취하는 자들로 일반인이나 다른 집단과 구별되는 집단적 동질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폐기물해양배출업자는 해양환경오염의 주요한 원인이 되는 폐기물 해양배출을 영업으로 하여 이익을 창출하고 있으므로 폐기물의 해양배출로 인하여 위축될 것이 분명한 수산업의 육성 및 해양환경개선 등을 위한 수산발전기금의 안정적인 운용재원 확보와 폐기물의 해양배출 억제라는 특별한 경제적·사회적 공적 과제와 객관적으로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고 공적과제 실현에 있어 조세외적 부담을 져야할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았다.[37]

⑪ 헌재 2004. 7. 15. 2002헌바42 수질개선부담금 2차, 합헌

헌법재판소는 적합성 심사에서 '특별히 밀접한 관련성' 여부를 별도로 심사하지 않고, "헌법 제35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함으로써 국민의 환경권과

37) 한편 이 사건에서는 "국가의 일반적 과제를 수행하는 데 부담금의 형식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요건 1도 수단의 적합성에서 판단하고 있으며, "이 사건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은 어업경영자금의 지원, 수산물 유통구조개선 및 가격안정, 경쟁력 있는 수산업 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설립된 수산발전기금의 안정적인 운용재원 확보와 폐기물의 해양배출 억제라는 특별한 공적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조세를 통해 구현할 수 있는 일반적 과제와는 엄연히 구별되는 것으로 부담금의 형식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또한 헌법 제35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국민의 환경권을 보장함과 아울러 국가와 국민에게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 헌법조항은 환경정책에 관한 국가적 규제와 조정을 뒷받침하는 헌법적 근거가 되며, 국가는 환경정책 실현을 위한 재원마련과 환경침해적 행위를 억제하고 환경보전에 적합한 행위를 유도하기 위한 수단으로 환경부담금을 부과·징수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헌재 1998. 12. 24. 98헌가1, 판례집 10-2, 819, 836)."라고 한다.

국가의 환경보전 노력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119조 제2항은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 제120조 제2항은 “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 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은 환경 및 경제에 관한 국가적 규제와 조정을 뒷받침하는 헌법적 근거가 된다. 그리하여 국가는 국민, 특히 저소득층 국민에게 질 좋은 수돗물을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기 위한 정책 및 음용수에 관한 국가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기 위한 정책을 실현하는 데 적합한 방향으로 국민의 경제활동을 유도함과 아울러 그러한 정책의 실현에 소요되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수질개선부담금과 같은 환경부담금을 부과·징수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먹는샘물은 수돗물과 마찬가지로 음용수로 사용된다는 점에서 수돗물과 대체적·경쟁적 관계에 있어서 먹는샘물이 음용수로 보편화되면 그만큼 수돗물 우선정책이 위축되는바, 먹는샘물을 수입하여 판매함으로써 수돗물 우선정책에 특별한 위험을 야기하는 수입판매업자에 대하여 수질개선부담금을 부과하기로 한 것은 부과대상자의 선정의 측면에서 적정하다고 할 수 있다.”라고 결정하였다.

⑫ 헌재 2019. 12. 27. 2017헌가21, 골프장 부가금, 위헌

골프장 부가금은 국민체육진흥법의 목적 등을 바탕으로 한 국민체육진흥계정의 재원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골프장 부가금을 통해 수행하려는 공적 과제는 국민체육진흥계정의 안정적 재원 마련을 토대로 한 ‘국민체육의 진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국민체육진흥법상 ‘체육’의 의미와 그 범위, 국민체육진흥계정의 사용 용도 등에 비추어보면, ‘국민체육의 진흥’은 국민체육진흥법이 담고 있는 체육정책 전반에 관한 여러 규율사항을상당히 폭넓게 아우르는 것으로서 이를 특별한 공적 과제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부가금의 납부의무자는 골프장 부가금 징수 대상 시설의 이용자로 한정된다. 이들은 여러 체육시설 가운데 회원제로 운영되는 골프장을 이용하는 집단이라

는 점에서 동질적인 특정 요소를 갖추고 있다. 그러나 광범위한 목표를 바탕으로 다양한 규율 내용을 수반하는 ‘국민체육의 진흥’이라는 공적 과제에 국민 중 어느 집단이 특별히 더 근접한다고 자리매김하는 것은 무리한 일이다. 수영장 등 다른 체육시설의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제도를 국민부담 경감 차원에서 폐지하면서 골프장 부가금 제도를 유지한 것은 이른바 고소득 계층이 회원제로 운영하는 골프장을 주로 이용한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골프 이외에도 많은 비용이 필요한 체육 활동이 적지 않을뿐더러, 체육시설 이용 비용의 다과(多寡)에 따라 ‘국민체육의 진흥’이라는 공적 과제에 대한 객관적 근접성의 정도가 달라진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골프장 부가금 납부의무자와 ‘국민체육의 진흥’이라는 골프장 부가금의 부과 목적 사이에는 특별히 객관적으로 밀접한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수많은 체육시설 중 유독 골프장 부가금 징수 대상 시설의 이용자만을 국민체육진흥계정 조성에 관한 조세 외적 부담을 져야 할 책임이 있는 집단으로 선정한 것에는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다. 골프장 부가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조성된 국민체육진흥계정의 설치 목적이 국민체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전반을 아우르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국민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수준의 효용성을 놓고 부담금의 정당화 요건인 집단적 효용성을 갖추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골프장 부가금은 일반 국민에 비해 특별히 객관적으로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다고 볼 수 없는 골프장 부가금 징수 대상 시설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을 초래하므로,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제2절 온라인 콘텐츠 부담금 해외 동향

1. 유럽연합의 OTT 분담금 현황

유럽연합은 유럽 디지털 단일시장 전략(A Digital Single Market Strategy for Europe)*을 위해 기존 AVMSD[38]를 개정하였다. 유럽이사회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가 전통적인 텔레비전 플랫폼에서 온라인 플랫폼으로 이동하고 있는 점을 반영하여 AVMSD를 개정하였다. 유럽연합 회원국의 디지털 산업을 통합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5년 EC 집행위원회가 3개의 주요과제를 제안하였으며, 이중 '디지털 네트워크 및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환경 조성'의 하나로 '최신 트렌드에 적합한 비즈니스 모델 및 콘텐츠 유통이 가능하도록 하는 시청각 미디어 프레임워크 검토'의 세부 추진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2010년 유럽연합은 유럽의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 제공자들 간의 '공정한 경쟁의 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목적 아래 시청각 미디어서비스 지침을 제정하였다.

기존 AVMSD와 다른 2018 AVMSD의 변화

① 주문형 서비스 사업자의 의무를 강화
※ Netflix와 같은 서비스 사업자에게 미성년자보호, 소비자보호, 쿼터제 등 의무 수준 강화
② 서비스 운영의 핵심적인 부분이 시청각미디어로 구성된 공유 플랫폼 사업자 역시, AVMSD이 규정하는 의무 및 책임의 이해관계자로 포함
③ 문화적 다양성 강화
※ 일방형, 쌍방형 서비스 제공자 모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국가의 시청각미디어 제작에 재정적으로 기여해야 함
④ 출신국 원칙(le principe du pays d'origine)에 따른 내국법 준수
⑤ 증오 및 테러 유발 콘텐츠에 대한 적법성 규제 강화 및 삭제 메커니즘 적용
⑥ 광고규제 유연성 확대
⑦ 미성년자 보호수준 강화

기금부과의 근거는 AVMSD 전문 제36조와 제13조 제2항은 주문형 시청각 미디어 사업

38) Audiovisual Media Services Directive

자가 자국 내에 사무소를 두지 않더라도 재정적 기여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으며 주문형 시청각 미디어 사업자에게 카탈로그에 유럽산 제작물이 최소 30% 이상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금을 포함한 유럽산 제작물에 대한 재정적 기여를 의무화하는 경우, 자국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면서 타회원국에 회사가 있는 사업자에게도 재정적 기여 의무 부과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때 재정적 기여는 회원국의 서비스가 공급되는 회원국에서 얻은 수입에만 기초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법인세 등과 달리 서비스가 소비되는 곳에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전문 (36)

회원국은 유럽산 콘텐츠에 대한 충분한 수준의 투자를 확보하기 위해 자국에 회사를 설립한 미디어 서비스 제공자에게 재정적 의무를 부과할 수 있어야 한다. 재정적 의무는 유럽산 콘텐츠의 제작이나 저작권 취득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방식을 취할 수 있다. 회원국은 또한 자국 영토에서 제공되거나 자국 영토를 대상으로 제공되는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에서 발생한 수익에 근거하여 세금을 부과하고 이를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동 지침은 상기한 재정적 의무와 회원국의 서로 다른 문화 정책 간에 밀접한 연계가 있음을 감안하여 다른 회원국에 회사를 설립하고 특정 회원국의 영토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송출하는 미디어 서비스 제공자에 대해서도 그러한 재정적 의무를 부과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이 경우 재정적 의무는 송출 대상 회원국의 이용자를 통해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만 부과되어야 한다. 송출 대상 회원국의 영화 기금 프로그램에 기여해야 하는 미디어 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회원국에 회사를 설립하지 않더라도 각 영화 기금 프로그램별로 미디어 서비스 제공자에게 부여하는 혜택을 비차별적 방식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제13조

1. 회원국은 자국의 관할권에서 주문형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디어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카탈로그에 유럽산 제작물을 최소 30% 이상 포함시키도록 하며, 유럽산 제작물의 현저성을 보장하도록 한다.
2. 회원국이 자국의 관할권에 속한 미디어 서비스 제공자에게 콘텐츠에 대한 직접 투자와 해당 국가의 콘텐츠 진흥 기금에 대한 기여를 포함하여 유럽산 제작물에 대한 재정적 기여를 의무화하는 경우, 해당 회원국은 자국 영토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다른 회원국에 회사가 설립되어있는 서비스 제공자에 대해서도 그와 같은 재정적 기여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비례성의 원칙에 따라 비차별적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3. 제2항에서 언급된 사례의 경우, 재정적 기여는 서비스 송출 대상이 되는 회원국에서 발생한 수익에만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해당 서비스 제공자가 설립된 회원국이 재

정적 기여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서비스 송출 대상인 회원국에서 부과한 재정적 기여 의무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일체의 재정적 기여는 유럽연합법, 특히 국가 보조금 규정(State Aid Rule)을 준수해야 한다.

2. 프랑스

프랑스는 CNC(프랑스 국립영화애니메이션센터, Centre national du cinema et de l'image animee)는 방송 프로그램 등의 제작비 지원을 위해 특수목적세를 부과하여 재정을 확보하고 있다. 프랑스의 방송 프로그램(보도 제외)은 100% 외주제작사가 제작하며, CNC 재원으로 최대 40% 지원(영화 50%, 저예산영화 70%까지)하고 있다. 분담금(특별목적의 세금)은 ① 영화표에 대한 세금(TSA), ② 텔레비전 에디터에 대한 세금(TST-E), ③ 텔레비전배급자에 대한 세금(TST-D), 시청각콘텐츠 서비스에 대한 세금(TSV)으로 구분된다.

<표 3-6> 분담금 종류별 주요 내용

구분	주요내용
TST-E	- 광고, 스폰서메시지 등으로부터의 수익을 기반으로 과세 - 광고 수익과 공영방송에 1,100만 유로를 공제 후 5.65% 요율 적용 - 광고메세지를 방송하지 않는 채널은 1600만 유로 공제 - 2017년 개정된 세법에 의해 통합 - CNC는 2018년 2억 9,680만 유로의 수입 창출
TST-D	- ① 하나 이상의 텔레비전 서비스에 대한 구독료 또는 ② 텔레비전 서비스의 수신을 가능하게 하는 전자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 제공 서비스 이용료를 기반으로 과세 - ①은 10% 공제, ②의 경우 66% 공제 후, 추가로 1,000만 유로 추가 공제 - TST-D의 수입은 2018년에 2억 2,320만 유로
TSV	- 온라인 비디오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세금 - 사용자의 구독료 및 광고 수익을 대상으로 함 - 2%의 세율을 기본으로 함

2017년 9월, 세법(Code general des impots 제1609조B항)을 개정하여 일명 '유튜브稅'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2018년 초부터 유튜브나 넷플릭스와 같은 온라인

TV플랫폼과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에 대해 의무적으로 세금이 부과되고 기존 과세기준 밖에 있던 동영상 무료게재사이트(유튜브)를 과세시스템 안으로 편입시켰다.

<표 3-7> 프랑스의 유튜브세 관련 연혁

년도	주요 내용
1993년~ 2004년	o VHD나 DVD와 같은 실물 영상매체에 대한 과세 법령에서 시작 o 2004년 프랑스 내 유료 주문형 비디오 사업으로 확대된 것에서 발전
2013년	o 프랑스 국회는 프랑스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 유료 동영상 공유 사이트로 부과대상 확대
2016년	o 유튜브 등 프랑스 및 외국에 설립된 모든 무료 동영상 게재 사이트의 광고 수익에 과세하는 것으로 그 범위를 넓히는 법안 통과

현재 TSV(la taxe sue la diffusion en video physique et en ligne de contenus audiovisuels)는 프랑스에서 설립되었는지와는 무관히 물리적 및 온라인 비디오 방송을 운영하는 자에 대해 부과되고 기존과 달리 프랑스 외의 지역에서 설립된 자도 프랑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방송을 하면 프랑스에 설립된 자와 같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OTT 사업자에 적용되는 과세 기준은 ① 구독료(Article 1609 sexdecies B Ⅲ 2°)와 ② 스폰서 비용을 포함한 광고매출(Article 1609 sexdecies B Ⅲ 3°)이며 무료로 제공되는 인터넷 동영상의 경우 광고매출(부가세 제외)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다. 징수율은 구독료 및 대상사이트 광고매출의 2%이고, 음란물 사이트의 음란물이나 폭력물의 경우 10%로 할증하고 있으며 공동체에서 공유를 목적으로 개인이 만든 시청각콘텐츠에 접속하는 서비스의 경우 기준 매출의 66% 공제하고 있다. 콘텐츠를 소비자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방송사업자는 10만 유로를 공제하고 시청각 콘텐츠가 부차적인 서비스이거나 정보서비스인 경우는 세금의 대상이 아니다. 단, TSV 수입은 2018년 기준 2,570만 유로로 2017년에 비하여 58.7%가 증가하였으며, Netflix나 Youtube 세금으로 거둬들인 수입은 1,000만 유로로 추산되고 있다. 유튜브세는 기존 비디오세와 같이 세법에 따라 재정부가 징수하여 영상 콘텐츠 제작비 지원을 위한 CNC 재원으로 활용되고 일반 세법상 징수절차에 의해 징수하며 CNC는 세무당국에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 가능하다. 과세율에 관하여 TST 및 TSV는 2021

년, 재정법 제62조에 근거하여 모두 5.15%의 통합률을 적용하도록 추진중에 있다. 개정의 이유는 방송 관련 각 행위자에 대해 세금관련 공정성 및 형평성을 추구하고 TSV의 경우 음란물 또는 폭력성이 있는 경우 15%까지 상향될 수 있다.

3. 독일

독일은 영화진흥법(Filmfoerderungsgesetz,FFG)에 따라 연방영화진흥청(Filmfoerderungsanstalt, FFA)이 연방 차원에서 독일 영화를 지원하고 있다. 영화진흥법은 독일 내 영화 산업 활성화와 독일 영화를 독일의 산업적 · 문화적 자산으로 만들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2017년부터 시행되는 개정 영화진흥법(FFG)은 후원 규모를 2배 가까이 증가했고, 시나리오 개발과 단편영화 후원이 확대되고 있다.

FG에 따라 ‘ 영화 ’ 를 활용하는 모든 분야 독일 영화의 보존과 지원을 위해 관련 사업자들은 일정 비율의 영화분담금(Filmabgabe)을 독일 영화진흥기구에 납부해야 된다. 영화관은 물론 비디오 산업, 온라인 미디어 제공업체, 방송사업자까지 거의 모든 종류의 미디어 산업분야가 이에 포함되며 영화분담금은 5년마다 기준이 변경되며, 영화홍보 및 프로그램 제작지원 등에 사용되고 있다. 영화분담금 징수에 대하여 이를 부과하기로 한 결정에 무효나 반대는 효력이 없음을 규정(FFG 148조)하고 있으며 독일에서 소재지 또는 설립이 없는 사업 대해서도 적용되며, 재정적 기부가 진행된 경우 예외가 적용된다.

비디오 프로그램 제공 업체 및 주문형 비디오 제공업체의 영화 배포 시 분담금 부담(152조 및 153조)하고 있는데 이미지 미디어에서 대여 또는 재판매로 58분 이상 필름을 사용하는 비디오 프로그램 제공 업체의 영화 배급은 연간 순 수익을 기반으로 판단하며 수수료율은 1.8 ~ 2.5 % 수준이다. 순 매출액이 50만 유로 미만이고 연극 영화 판매량의 2% 미만인 경우 공급 업체는 분담금을 지불하지 않는다. 영화 상영 작품을 활용하여 연간 50만 유로 미만의 비용을 지출하는 VOD 제공 업체는 요금 부과가 면제되며, 연간 순매출의 경우 영화 수수료는 1.8 ~ 2.5% 수준이다.

방송사의 경우 영화 배급에 따라 분담금을 부과(154조-157조)하고 있다. 공공 방송사의 경우, 영화 분담금은 영화 작품의 유통에 지출하는 비용에 부과하며 수수료는 비용의 3%, 무료 방송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사설 방송사는 순 광고 수익에 영화 분담금을 지불하며

수수료율은 0.15 ~ 0.95% 사이다. 영화 출시에는 영화 콘텐츠의 일부만 포함하거나(전체 방송 시간의 2% 미만) 또는 이러한 총 수익이 75만 유로 미만인 프로그램은 포함되지 않는다. 유료 TV 및 프로그램 마케터의 영화 배급은 구독 계약의 순 매출액을 기준으로 분담금 부과(156조)하고 있으며, 유료 TV 및 프로그램 마케팅 담당자는 구독 계약으로 순 매출액의 0.25%에 해당하는 영화분담금을 납부하고 있다. 총 방송 시간 중 영화 필름 점유율이 2% 미만인 프로그램 제공은 제외된다.

4. 디지털세에 관한 논의

경제활동의 디지털화에 대응하기 위해 상당수의 국가들은 과세의 공정성 확보 및 세수 확충 차원에서 애플이나 구글 등 미국 정보통신 대기업들을 대상으로 디지털세 부과가 논의 되었다. 특정 국가 내 고정사업장을 운영하지 않고 있는 글로벌 디지털기업이 해당 국가에서 수익 활동을 펼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과세가 불가능해 과세의 공정성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이다. 또한 디지털 서비스 글로벌 기업들이 기존의 제조 중심 산업들과 비교해 높은 매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음에도 현실적인 과세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낮은 실효세율을 기록하고 있는 점은 조세 형평성 문제를 야기했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 글로벌 기업들을 대상으로 전통적인 조세체계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조세체제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다.

2018년 3월 EU가 과세방안을 발표한 이후 한국과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국가는 물론 멕시코 칠레 등 중남미 국가들도 정보통신 대기업을 대상으로 디지털서비스세 부과방안 검토되고 현재 논의되고 있는 디지털세는 새로운 유형의 법인세로 기능할 가능성 있다. OECD는 G7과 G20을 중심으로 디지털세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2020년까지 디지털세 관련한 보고서를 최종적으로 발표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2015년 OECD는 BEPS 프로젝트에서 디지털 경제는 ① 사업장 없이 수익실현이 가능하고, ② 무형자산 의존도가 높으며, ③ 데이터 및 사용자 참여가 가치창출에 기여한다는 점을 특징으로 제시하고 있다. OECD는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서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따라 국제적인 무형자산과 서비스업, 기업 간 거래(B2B)의 경우 소비자가 위치한 곳에서 과세권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소비되는 곳이 공급되는 곳과 다른 경우 소비되는 국가에

서 과세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국가 간 이견이 크지 않다.

그러나 법인세의 경우 고정사업장 개념을 중심으로 본점이나 실질적인 영업장소가 소재한 국가에서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고정사업장을 어느 곳에서나 만들 수 있는 디지털 기업의 경우 기존의 법인세 과세체계 유지가 어렵다는 평가하고 있다. 실체가 없는 무형자산으로 매출을 발생시키는 디지털 기업은 특정 국가 내 영업장을 운영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해외 디지털 기업 유치를 위해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소위 신자유주의 감세경쟁까지 일어나고 있다. 일례로 아일랜드는 애플에 1% 셰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룩셈부루크는 아마존 수익의 75%를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글로벌 기업들은 세율이 가장 낮은 국가나 지역에 본사를 설립하거나 서버 및 고정사업장을 이전하는 등 국가 간 소득 이전을 통한 세원 잠식 전략이 글로벌 기업들의 보편적 조세전략으로 이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2018년 12월 새로운 국제조세 기준으로 영국, 미국 G24(개도국협의체), 독일·프랑스에서 4가지 제안서 제출하였고 이에 OECD 사무국은 2019년 10월 9일 '시장소재지 과세권 강화 등 제안된 안의 공통점에 기반한 통합접근법(Unified Approach)'을 제안되어 있다.

<표 3-8> 2019년 디지털세에 관한 OECD 제안

분류	주요 내용
Pillar 1 : 통합접근법 주요내용	(적용범위) 디지털 기업 외에도 광범위한 소비자 대상 사업으로 확대하여 제안 (대상업종)제조업 포함하여 소비자 대상 사업을 하는 다국적 기업에 적용 · 금융업, 1차산업, 광업 등 일부 산업은 제외 검토중 (연계점) 물리적 실재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시장소재지 내 매출 등에 근거하여 과세권을 인정하는 새로운 연계성 기준 제안 · 다국적 기업의 경우 시장소재지국 내 매출이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다국적 기업의 물리적 실재가 없더라도 그 국가에 과세권 부여 (이익배분 방법) 다국적기업 그룹의 이익 중 시장소재지국에 배분가능한 이익을 3가지 종류로 구분 ① (Amount A: 초과이익 배분) 다국적기업의 글로벌 이익 중 통상적인 이익을 넘어서는 초과 이익(above normal profit) 중 시장에서 창출한 가치 부분을 공식에 의해 산출하여 시장 소재지국 별 매출에 따라 배분 ⇒ 새로운 과세권 (New Taxing Right) ② (Amount B: 기본기능 보상) 시장 소재지국 자회사 등에서 수행하는

	기본적인 마케팅 · 판매 활동(baseline activities)에 대해 고정된 이익률(fixed return)로 보상 ③ (Amount C: 추가기능 보상) Amount B가 적용되는 기본기능을 넘어 시장소재지에서 수행된 특별한 기능(예:제조 등)이 있는 경우 추가적으로 보상(정상가격기준 적용)
Pillar 2 : 글로벌 최저한세	(소득산입규칙) 해외 자회사 소득이 최저한세 이하로 과세되는 경우 최저한세율까지의 소득을 모회사 과세소득에 포함하여 과세(Income Inclusion rule) (세원잠식비용 공제부인) 국외 특수관계인에게 지급된 금액이 비과세 · 저율과세되는 경우 지급인의 거주지국에서 그 비용공제를 부인(Undertaxed Payments rule)해외 자회사 소득이 최저한세 이하로 과세되는 경우 최저한세율까지의 소득을 모회사 과세소득에 포함하여 과세(Income Inclusion rule) (과세권 전환규칙) 조세조약상 국외원천소득(이바 · 배당 등)에 대해 그 소득을 받는 자의 거주지국에서 면세(exemption)하고, 그 소득의 원천지국에서도 비과세 · 저율과세될 경우 이중 비과세 문제 발생 ⇒ 그 과세권을 거주지국으로 전환시켜 과세하고 원천지국에서 납부된 세액은 세액공제(credit) 적용(Switch-over rule) (조세조약 혜택 배제) 거주지국에서 최저한세 이하로 과세되는 소득에 대하여 원천지국에서 조제조약 혜택 부인(subject to tax rule)

프랑스는 2019년 7월 연간 매출액 7억5,000만 유로 이상이면서 프랑스에서 2,500만 유로 이상의 매출이 발생하는 디지털 기업을 대상으로 프랑스 內 매출액의 3%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디지털서비스세법 (taxe sur les services numériques) 통과되었다. 프랑스는 2010년 온라인 광고세의 도입 추진을 시작하였고, 2016년 구글 파리지사에 대한 압수수색 및 세무조사를 하면서 과세를 추진하였다. 프랑스 정부는 전통적 기업과 글로벌 디지털 기업 간 실질법인세율의 격차로 공정성이 침해받고 있음을 강조하였으며, 미국 IT 기업들의 신고 매출액 축소를 지적하고 있다. 신고매출액 축소율[39]은 구글이 85%, 애플이 79%, 페이스북이 74%, 마이크로소프트가 73%, 아마존이 53%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제3절 국내 부담금 타법 사례

1. 개요

현행 국내 부담금은 국가 재정법 및 부담금 관리 기본법에 명시된 규정에 한하여 부과 징수되고 있다. 방송통신발전 기금 또한 국가 재정법 및 부담금 관리 기본법 별표에 명시되어 있다. 해당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담금의 성격은 상이한데 예로서 비용을 유발하는 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식, 이익을 얻는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는 등의 체계를 가지고 있다. 이 절에서는 국내 전제 부담금의 법적 근거와 산정 체계 등을 살펴보고 현행 방송분야의 방송통신발전기금과의 유사성 차이점 등의 시사점을 서술하였다.

2. 각 법령에서 정하는 부담금 현황

① 토지 개발이익에 따른 개발부담금

가. 근거 법령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나. 목적 : 토지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이를 적정하게 배분하여서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법 제1조)

다. 부과 대상 : 개발사업자

택지개발사업자, 산업단지개발사업자, 관광단지조성사업자, 도시개발사업자, 지역개발사업자, 도시환경정비사업자, 교통시설 및 물류시설 용지조성사업자, 체육시설 부지조성사업자 등(법 제5조 및 제6조)

라. 산정체계(법 제8조)

개발부담금 = 부과 종료 시점의 부과 대상 토지의 가액(종료시점지가) - 부과 개시 시점의 부과 대상 토지의 가액(개시시점지가) - 부과 기간의 정상지가상승분 - 개발비용

②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가. 근거 법령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나. 목적 : 개발제한구역의 보전과 관리를 위한 재원 확보(법 제21조제1항)

다. 부과 대상 : 복구계획 미제시 및 복구계획 없는 개발사업자(법 제21조)

③ 안전관리부담금

가. 근거법령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나. 목적 : 가스의 안전관리와 유통구조의 개선을 위하여 안전관리부담금을 부과·징수(법 제34조의2제1항)

다. 부과 대상 : 액화석유가스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자와 액화석유가스 · 액화천연가스를 수입하는 자(사업자)

라. 산정체계 : 판매 또는 사용량에 비례

법에서 정한 상한-액화석유가스 : 5원/kg, 액화천연가스 : 4.4원/㎥

고시에서 정한 기준-액화석유가스 4.5원/kg, 액화천연가스 : 3.9원/㎥

④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금

가. 근거법령 :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5조제4항 및 제5항

나. 목적 :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및 부실채권정리기금 채무의 원활한 상환을 위하여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및 부실채권정리기금에 자금을 출연(出捐)(제1조, 제3조제1항)

다. 부과 대상 : 우체국예금 중 일정액, 우체국보험특별회계 중 일정액

라. 산정체계 : 우체국예금액 평균잔액의 일정비율(시행령 제5조제4항 및 제5항)

우체국예금의 전년도 평균 잔액 × 0.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0.1%

⑤ 소음부담금

가. 근거법령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나. 목적 : 공항소음을 방지하고 소음대책지역의 공항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주민의 복지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법 제1조)

다. 부과 대상 : 항공기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항공기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자(법

제17조)

라. 산정체계 : 소음 등급을 고려한 항공기 착륙 횟수에 비례(시행령 제10조)

부담금 = 착륙료(부가가치세 제외) × 소음 등급별 요율(오후 11시~다음날 오전 6시는 2배 할증)

⑥ 출국납부금

가. 근거법령 : 「관광진흥개발기금법 」 제2조제3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46조제3항

나. 목적 : 관광사업을 효율적으로 발전시키고 관광을 통한 외화 수입의 증대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 _제1조

다. 부과 대상 : 카지노사업자, 국내 공항과 항만을 통하여 출국하는 자

라. 산정체계(부과기준)

국내 공항을 통하여 출국시 1만원, 국내 항만을 통하여 출국시 1천원

⑦ 관광진흥개발기금 (카지노사업자 납부금)

가. 근거법령 : 「관광진흥법 」 제30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45조제3항

나. 목적 :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자원을 개발하며 관광사업을 육성하여 관광 진흥에 이바지(법 제1조)

다. 부과 대상 : 카지노 사업자

라. 산정체계 : 연간총매출액에 비례

총매출액 10억원 이하 : 총매출액 × 1%

총매출액 1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 1천만원 +(총매출액-10억원)×5%

총매출액 100억원 초과 : 4억6천만원 + (총매출액 - 100억원) × 10%

⑧ 관광지등 지원시설 이용자 분담금

가. 근거법령 :「관광진흥법 」 제64조

나. 목적 : 관광사업 육성을 위해 지원시설 건설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이용자에

게 부담금 부담

다. 부과 대상 : 지원시설의 이용자(개인)

라. 산정체계

건설비용 = 공사비(조사측량비 · 설계비 및 관리비는 제외)+보상비

이용자의 수 및 이용횟수 고려 사업시행자가 이용자와 협의하여 산정

⑨ 관광지등 지원시설 원인자 부담금

가. 근거법령 : 「관광진흥법」 제64조

나. 목적 : 관광 여건 조성, 관광자원 개발하며 관광사업을 육성

다. 부과 대상 : 지원시설 건설의 원인이 되는 공사 또는 행위를 한 자, 관광지 등의 안에 있는 공동시설의 유지 · 관리 및 보수를 위해 관광지 등에서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부담금 부과

라. 산정체계(부과기준)

건설비용 = 공사비 + 보상비(령 제53조)

⑩ 광해방지의무자 부담금

가. 근거법령 :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24조

나. 목적 : 광해방지 및 자연환경의 원상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보전

다. 부과 대상 : 광해방지의무자

* 광해방지의무자 : 채굴계획의 인가를 받은 채굴권자 또는 조광권자 등

라. 산정체계(부과기준) : 광산별로 부과, 비용분담형

부담금 = (광해방지사업비 ×부담금부과율 (30%))-금년도까지의 부담금적립금

⑪ 광물 수입부과금 및 판매부과금

가. 근거법령 : 「광업법」 제87조

나. 목적 : 광물의 수급과 가격 안정, 탐사 · 개발, 가공 · 유통 · 비축 사업에 대한 보조 또는 융자, 광산의 광해 방지 및 복구 등

다. 부과 대상 : 광물을 수입하거나 판매하는 자

라. 산정체계 : 제정되어 있지 않음

⑫ 국민건강증진부담금

가. 근거법령 : 「국민건강증진법 」 제23

나. 목적 : 국민 건강을 증진

다. 부과 대상 : 담배의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법 제9조의2제1항)

라. 산정체계(부과기준) : 종량제

궐련: 20개비당 841원, 니코틴 용액을 사용하는 전자담배: 1밀리리터당 525원 등

⑬ 회원제 골프장 시설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

가. 근거법령 : 「국민체육진흥법 」 제20조 및 제23조 : 위헌판결

⑭ 개발도상국 질병의 예방과 퇴치 납부금

가. 근거법령 : 「국제질병퇴치기금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납부금

나. 목적 : 개발도상국(開發途上國)의 질병의 예방과 퇴치를 지원 자금 조성

다. 부과 대상 : 국내 공항을 통하여 출국하는 사람

라. 산정체계

1인당 1,000원 (상위 등급의 좌석으로 출국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1만원 이내)

⑮ 기반시설설치비용 부과금

가. 근거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8조

나. 목적 : 단독주택 및 숙박시설 등의 신·증축 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

다. 부과 대상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인 건축행위를 하는 자

라. 산정체계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 용지비용 x 민간 개발사업자의 부담률(총 공사비용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부담분을 제외한 나머지의 비율)

⑯ 금강수계 물이용부담금

가. 근거법령 :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나. 목적 : 주민지원사업과 수질개선사업 등의 재원 조성

다. 부과 대상 : 공공수역에서 취수한 원수를 직접 또는 정수(淨水)하여 공급받는 최종 수요자(수도사업자는 대납)

라. 산정체계(부과기준) : 종량제

물이용 부담금 = 물사용량 × 부과율(1톤당 170원)

⑰ 기술신용보증기금

가. 근거법령 : 「기술신용보증기금법 」 제13조

나. 목적 : 신기술사업에 대한 자금 공급의 원활화

다. 부과 대상 :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라. 산정체계 :

매 분기말 현재 신기술사업금융업자출연기준융자금의 분기중 평균잔액에 대하여 연율 1,0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 분기 종료 후 다음 달 말일까지 기술신용보증기금에 출연

⑱ 낙동강수계 물이용부담금

가. 근거법령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나. 목적 : 주민지원사업과 수질개선사업 등의 재원조성

다. 부과 대상 : 공공수역으로부터 취수된 원수를 직접 또는 정수하여 공급받는 최종 수요자

라. 산정체계(부과기준)

물이용부담금 : 물사용량(수도요금의 부과·징수기준) × 170원

⑲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가. 근거법령 :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 제4조

나. 목적 : 농림수산업자등의 신용 보증

다. 부과 대상 : 금융기관

라. 산정체계(부과기준)

o 농협은행,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신용보증기금 출연금 = 대출금의 월중 평균잔액에 대한 연율 1만분의 20

o 지역농업협동조합 등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출연금 = 대출금 월 중 평균잔액 × 연율 10만분의 13

⑳ 농산물수입이익 부담금

가. 근거법령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6조

나. 목적 : 농수산물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적정한 가격을 유지

다. 부과 대상 :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품목의 농산물을 수입하는 자

고추, 마늘, 양파, 생강, 참깨, 참기름, 오렌지, 감귤류

라. 산정체계(부과기준) :

o 고추·마늘·양파·생강·참깨 : 판매수입금 - 각종 공과금, 보관료, 운송료, 판매수수료 등을 뺀 금액 / 또는 해당 품목의 수입자로 결정된 자가 수입자 결정 시 납입 의사를 표시한 금액

o 참기름·오렌지·감귤류 : 해당 품목의 수입자로 결정된 자가 수입자 결정시 납입 의사를 표시한 금액

㉑ 전기사용자 일시부담금

가. 근거법령 :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제3조

나. 목적 : 전기를 공급하려는 지역의 배전시설공사에 드는 비용과 자가발전시설공사 및 개체공사(改替工事)에 드는 비용 충당

다. 부과 대상 : 전기사용자

라. 산정체계

전기사용자의 일시부담금 = 재정융자금 × 20% 이내

㉒ 농지보전부담금

가. 근거법령 : 「농지법」 제38조

나. 목적 : 농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

다. 부과 대상 :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자 등

라. 산정체계

농지보전부담금 = 해당 농지의 개별공시지가 × 30%

(제곱미터당 5만 원을 초과할 경우 전용되는 농지의 제곱미터 × 5만 원)

㉓ 연초경작지원 출연금

가. 근거법령 : 「담배사업법」 제25조의3

나. 목적 : 보건의료·환경보호등의 공익사업과 연초경작지원

다. 부과 대상 : 담배 제조업자

라. 산정체계

연초경작지원 등의 사업을 위한 출연금 = 권련 20개비당 5원

㉔ 대기오염물질 배출부과금

가. 근거법령 :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

나. 목적 :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대기환경상의 피해를 방지하거나 저감

다. 부과 대상 :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 등

라. 산정체계

배출부과금 = 기본부과금 + 초과부과금(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배출허용기준초과 오염물질배출량×지역별 부과계수×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

㉕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가. 근거법령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나. 목적 : 광역교통시설 등의 건설 및 개량, 광역버스운송사업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다. 부과 대상 : 도시권의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아파트지구개발사업, 주택건설사

업 등의 사업 시행자

라. 산정체계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 {1㎡당 표준개발비×부과율 × 개발면적 ×(용적률 ÷ 200)} − 공제액 등

㉖ 댐건설에 따른 수익자부담금

가. 근거법령 :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나. 목적 : 다목적댐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

다. 부과 대상 : 다목적댐이 건설될 하천을 이용하여 발전사업을 하려는 자

라. 산정체계

수익자부담금 = 예상 수익 × 50% 이내(댐 건설 공사비의 1/2 이내)

㉗ 도로공사 원인자 부담금

가. 근거법령 : 「도로법」 제91조

나. 목적 : 도로공사 원인 제공자에게 도로공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부담

다. 부과 대상 : 도로공사 원인 제공자

라. 산정체계 : 도로공사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㉘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의 설치 비용 부담금

가. 근거법령 : 「도시개발법」 제58조

나. 목적 : 도시환경의 조성과 공공복리의 증진

다. 부과 대상 : 기반시설을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 설치하는 시행자 등

라. 산정체계(부과기준)

개발계획에 포함 된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계획에 따라 부과

㉙ 혼잡통행료

가. 근거법령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5조

나. 목적 :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 증진

다. 부과 대상 :일정 시간대에 혼잡통행료 부과지역으로 들어가는 자동차

라. 산정체계(부과기준): 국토교통부령 _법 제35조, 시행규칙 제3조

혼잡통행료 부과에 따른 사회ㆍ경제적 영향을 고려하여 결정

㉚ 교통유발부담금

가. 근거법령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

나. 목적 : 교통시설의 정비를 촉진하고 교통수단과 교통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여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 증진에 이바지함_제1조

다. 부과 대상: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 등

라. 산정체계

부담금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단위부담금(규칙 별표3)×교통유발계수

㉛ 수질개선부담금

가. 근거법령 : 「먹는물관리법」 제31조

나. 목적 : 지하수자원을 보호하고 먹는물의 수질개선에 이바지함

다. 부과 대상: 샘물 개발허가를 받은 자,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

라. 산정체계

o 개발허가를 받은 자로서 기타샘물의 개발허가를 받은 자가 취수한 샘물등

- 201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세제곱미터당 1,600원
- 201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세제곱미터당 1,900원
- 2012년 1월 1일부터: 1세제곱미터당 2,200원

o 개발허가를 받은 자로서 탄산수를 제조하기 위하여 먹는샘물등의 제조설비를 사용하는 자가 취수한 샘물등, 먹는샘물등의 제조업 허가를 받은 자(이하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라 한다)가 취수한 샘물등, 3.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의 등록을 받은 자(이하 "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자"라 한다)가 수입한 먹는샘물등

- 201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세제곱미터당 3,400원
- 201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세제곱미터당 2,800원
- 2012년 1월 1일부터: 1세제곱미터당 2,200원

㉜ 물류시설의 개발 시설부담금

가. 근거법령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4조

나. 목적 : 물류시설을 합리적으로 배치·운영하고 물류시설 용지를 원활히 공급

다. 부과 대상: 존치시설의 소유자

라. 산정체계

o 공공시설의 설치비용=[별표2]에 따라 산정한 용지비, 용지부담금, 조성비, 기반시설 설치비, 직접인건비, 이주대책비, 판매비, 일반관리비, 자본비용 및 그 밖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

o 존치 시설의 소유자나 개발 후 토지·시설 등을 분양받는 자가 내야 할 시설부담금= 공공시설의 설치비용÷개발 후 분양하는 총면적×시설부담금을 내야 할 자의 소유부지 면적

㉝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

가. 근거법령: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15조

나. 목적: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 중 사용후핵연료의 관리에 관한 사업을 원활수행

다. 부과 대상: 원자력발전사업자

라. 산정체계

o 부담금 = 단위발생량당 소요비용 × 분기별 발생량

※ 단위발생량당 소요비용 =(미래사업비의 현재가치 - 부담금 적립잔액)× 1/미래 사용후핵연료발생량의 현재가치

㉞ 중독예방치유부담금

가. 근거법령: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 제14조의2

나. 목적: 사행산업으로 인한 부작용 최소화와 불법사행산업에 대한 감시

다. 부과 대상: 사행산업사업자

라. 산정체계

o 중독예방치유부담금 =연간 순매출액(총매출액에서 환급금 등을 공제한 금액으로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의 1,0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부과 및 징수

㉟ 임산물 수입이익금

가. 근거법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나. 목적: 산림자원의 조성과 관리를 통하여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발휘하게 하고 산림의 지속가능한 보전(保全)과 이용을 도모

다. 부과 대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임산물을 수입하는 자

라. 산정체계

o 지정기관배정방식 : 해당품목의 판매수익금에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용 산정기준 및 방법에 따라 산정된 물품대금 · 운임 · 보험료 그 밖에 수입에 소요되는 비목의 비용과 제세공과금 · 보관료 · 운송료 · 판매수수료 등 국내 판매에 소요되는 비목을 공제한 금액

o 수입권공매방식 : 해당품목의 수입자로 결정된 자가 수입자 결정시 납입의 의사를 표시한 금액

㊱ 시설부담금

가. 근거법령: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3조

나. 목적: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과 산업의 합리적 배치

다. 부과 대상: 존치시설물의 소유자

라. 산정체계

시설부담금 =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x 부담률 x 용도별 가중치 x 지역감면율 x 존치하는 부지 면적

㊲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분할납부이행보증금

가. 근거법령: 「산지관리법」 제19조

나. 목적: 산지(山地)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여 임업의 발전과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의 증진을 도모

다. 부과 대상: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자,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으려는 자

라. 산정체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법 제19조)=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되는 산지의 면적×단위면적당 금액

㊳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 부과금

가. 근거법령: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 및 제37조

나. 목적: 석유 수급과 석유가격의 안정

다. 부과 대상: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석유판매업자, 석유제품 생산판매업자

라. 산정체계

석유의 수입·판매 부과금= 1리터당 36원(천연가스 및 석유가스의 경우에는 그 가스를 액화하였을 때를 기준으로 1리터당 36원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제1항1호에 따른 부과금), 수입 석유가격과 국내 석유가격과의 차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금액

㊴ 과밀부담금

가. 근거법령: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2조

나. 목적: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도록 유도하여 수도권을 질서 있게 정비하고 균형 있게 발전

다. 부과 대상: 서울특별시에서 인구집중유발시설 중 업무용 건축물, 판매용 건축물, 공공 청사, 복합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 및 조합

라. 산정체계

건축비의 100분의 10, 다만, 건축비의 100분의 5까지 조절 가능_제14조, 시행령 18조, 위임행정규칙(과밀부담금 부과를 위한 표준건축비)

㊵ 원인자부담금

가. 근거법령: 「수도법」 제71조

나. 목적: 수도를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관리하여 공중위생을 향상시키고 생활환경을 개선

다. 부과 대상: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 또는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

라. 산정체계

- 수도사업자와 부담할 자가 협의
- 수도사업자가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부담하게 할 경우: 수도시설의 손괴 등으로 인하여 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의 요금에 상당하는 금액+시설물의 원상복구에 드는 공사비+ 단수(斷水)로 인한 급수차 사용경비+도로복구비와 도로결빙 방지비용+ 복구작업에 동원된 차량 및 직원의 경비+그 밖에 홍보에 든 경비 등

㊶ 따른 수산자원조성금

가. 근거법령: 「수산자원관리법」 제44조

나. 목적: 수산자원조성사업에 필요한 투자재원의 확보

다. 부과 대상: 양식업면허를 받은 자, 양식업면허의 연장허가를 받은 자, 양식업 허가를 받은 자 등

라. 산정체계

어류·패류 등 양식어업: 헥타르당 10만 원, 정치망어업, 해조류, 복합양식어업: 헥타르당 3만 원 등

㊷ 배출부과금

가. 근거법령: 「물환경보전법」 제41조

나. 목적: 수질오염물질로 인한 수질오염 및 수생태계 훼손을 방지하거나 감소

다. 부과 대상: 사업자, 무허가, 무신고 배출시설 설치 변경한 자

라. 산정체계

o 기본배출부과금 =기준 이내 배출량 × 수질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 ×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 × 사업장별 부과계수 × 지역별 부과계수 × 방류수수질기준초과율

별 부과계수

o 초과배출부과금 : 기준초과배출량 × 수질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 ×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 × 지역별 부과계수 × 배출허용기준초과율별 부과계수(법 제41조제1항제2호나목의 경우에는 유출계수·누출계수) × 배출허용기준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 제3항 각호 구분에 따른 금액(법 제41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초과배출부과금은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은 400만원, 제2종사업장은 300만원, 제3종사업장은 200만원, 제4종사업장은 100만원, 제5종사업장은 50만원/법 제41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초과배출부과금은 500만원)

㊸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부담금

가. 근거법령: 「물환경보전법 」 제48조의2

나. 목적: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충당

다. 부과 대상: 원인자

라. 산정체계

원인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전체 공공폐수처리시설사업에 드는 비용-「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금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보조금을 뺀 금액

㊹ 신용보증기금 출연금

가. 근거법령: 「신용보증기금법 」 제6조

나. 목적: 담보능력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 기업의 자금융통 원활하게 함

다. 부과 대상: 정부, 금융회사등 , 기업, 그외

라. 산정체계

금융회사등 = 해당 대출금에 대하여 연율(年率) 1천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

㊺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

가. 근거법령: 「약사법」 제86조의2

나. 목적: 의약품 부작용에 대한 피해를 구제함으로써 藥事에 관한 일을 원활하게 함

다. 부과 대상: 의약품의 제조업자 · 품목허가를 받은 자 및 수입자

라. 산정체계

o 본부담금: 전년도 의약품 생산액 및 수입액의 1000분의 1

o 추가부담금: 전년도 해당 의약품으로 인한 피해구제 지급액의 100분의 25(다만, 그 의약품의 전년도 생산액 · 수입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함)

㊻ 양곡수입이익금

가. 근거법령: 「양곡관리법」 제13조의2

나. 목적: 양곡의 수급관리 및 식량의 안정적 확보

다. 부과 대상: 허가 또는 추천을 받아 양곡을 수입하는 자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품목을 수입하는 자

라. 산정체계

수입이익금 =양곡의 판매수입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용산정기준 및 방법에 따라 산정된 해당 양곡의 물품대금 · 운임 · 보험료 , 그 밖의 수입에 소요되는 비목의 비용, 제세공과금 · 보관료 · 운송료 · 판매수수료 등 국내 판매에 소요되는 비목의 비용

㊼ 물이용부담금

가. 근거법령: 「영산강 · 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나. 목적: 주민지원사업과 수질개선사업 등의 재원의 조성

다. 부과 대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수역으로부터 취수된 원수를 직접 또는 정수(淨水)하여 공급받는 최종 수요자

라. 산정체계

o 물이용부담금 =최종수요자의 물사용량 1톤당 170원 x 물사용량(수도요금의 부과·징수 기준)

o 전용수도 설치자와 하천수 사용자의 물이용부담금 등=해당 전용수도 설치자와 하천수 사용자가 취수한 물의 양x최종수요자의 물사용량 1톤당 170원

마. 면제 및 감면 기준

상수원관리지역 , 공공수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집수구역(빗물이 자연적으로 하천·호소 등 공공수역으로 흘러드는 지역으로서 주변의 능선을 잇는 선으로 둘러싸인 구역), 「전원개발촉진법 」 제3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자로서 발전용 댐을 운영하는 자, 하천수를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자

㊽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가. 근거법령: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에 따른

나. 목적: 한국영화의 발전 및 영화·비디오물산업의 진흥을 위함

다. 부과 대상: 영화상영관(비상설상영장을 포함)에 입장하는 관람객

라. 산정체계

부과금=영화상영관 입장권 가액의 100분의 3

㊾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특별기여금

가. 근거법령: 「예금자보호법 」 제30조의3

나. 목적: 금융회사가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등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

다. 부과 대상: 부보금융회사

라. 산정체계 :

특별기여금= 1,0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x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㊿ 특정물질 제조·수입 부담금

가.근거법령: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

나. 목적: 오존층 보호를 위해 특정물질 배출 억제 및 특정물질 사용합리화를 위한 사업, 국제협력 사업 등의 재원을 조성

다. 부과 대상: 제조업자, 수입업자

라. 산정체계

부담금= 특정물질의 종류별 킬로그램당 부담금 x 해당 특정물질을 제조·판매하거나 수입하는 수량_제24조의4, 제10조의4, 별표 1의2

㊶ 외환건전성부담금

가. 근거법령: 「외국환거래법 」 제11조의2

나. 목적: 외화자금의 급격한 유입·유출에 따른 금융시장의 불안을 최소화

다. 부과 대상: 은행, 농협은행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 등

라. 산정체계

부담금= 비예금성외화부채등의 잔액 x 부과요율

㊷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

가. 근거법령: 「원자력안전법 」 제111조의2

나. 목적: 원자력안전성 심사 등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함

다. 부과 대상: 이 법에 따른 허가·지정·승인·등록 또는 교육훈련을 신청한 자, 해당 원자력관계사업자 또는 판독업무자

라. 산정체계

부담금=업무별 전년도 업무량 × 기준단가

㊸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납부금

가. 근거법령: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4조

나. 목적: 농수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가격안정 도모 및 유통구조 개선을 촉진하기 위한 재원마련

다. 부과 대상: 농수산물을 수입하는 자, 인삼류를 수입하는 자

라. 산정체계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수입가격과 판매가격의 차액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㊹ 사업주의 부담금

가. 근거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9조

나. 목적: 미지급 임금등을 대신 지급하는데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함

다. 부과 대상: 사업주

라. 산정체계

사업주의 부담금 = 보수총액 X 부담금비율(보수총액의 1000분의 0.6)

㊺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분담금

가. 근거법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7조

나. 목적: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및 관련 사업을 위함

다. 부과 대상: 책임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하는 자동차보유자

라. 산정체계

책임보험등의 보험료(책임공제의 경우에는 책임공제분담금) X 1,000분의 10

㊻ 생태계보전협력금 _환경부

가. 근거법령:「자연환경보전법 」 제46조

나. 목적: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자연자산을 관리 · 활용

다. 부과 대상: 자연환경 또는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거나 생물다양성의 감소를 초래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

라. 산정체계

생태계보전협력금 = 생태계 훼손면적 × 단위면적당 부과금액* × 지역계수** (최대 50억 원)

㊼ 폐기물부담금 _환경부

가. 근거법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나. 목적: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의 낭비 예방

다. 부과 대상: 특정대기유해물질 등이 들어있거나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 관리상의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 · 재료 · 용기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

라. 산정체계

폐기물부담금 = 제품 · 재료 · 용기의 출고 또는 수입 실적에 따른 산출기준 × 부담금

산정지수

⑧ 재활용부과금 _환경부

가. 근거법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나. 목적: 재활용의무 이행 강제 및 재활용 촉진 목적

다. 부과 대상: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재활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조합원의 재활용의무를 대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라. 산정체계

재활용부과금 = [재활용의무량 중 재활용되지 아니한 수량 × 제품·포장재별 재활용기준비용 × 재활용비용산정지수 (1.3417)] + 재활용의무량미이행률에 따른 가산금액(재활용 비용의 100분의 30 이하)

⑨ 농산물 공매납입금 또는 수입이익금 _농림축산식품부

가.근거법령: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나. 목적: 협정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인등에 대한 지원대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

다. 부과 대상: 협정에 따른 관세할당물량이 적용되는 농산물을 협정에서 정한 양허관세로 수입하는 자

라. 산정체계

o 공매납입금 = 톤당 응찰단가 × 응찰수량

o 수입이익금 = (국내가격과 수입가격 간의 차액의 범위 내)

⑩ 수산물 공매납입금 또는 수입이익금 _해양수산부

가.근거법령: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나. 목적: 협정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인등에 대한 지원대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

다. 부과 대상: 협정에 따른 관세할당물량이 적용되는 수산물을 협정에서 정한 양허관세로 수입하는 자

라. 산정체계

o 공매납입금 = 톤당 응찰단가 × 응찰수량

o 수입이익금 = (국내가격과 수입가격 간의 차액의 범위 내)

⑥1 장애인 고용부담금 _고용노동부

가. 근거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에 따른

나. 목적: 장애인 고용에 따른 부담의 분담 즉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와 고용하지 않은 사업주간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

다. 부과 대상: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상시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제외)

라. 산정체계

장애인 고용부담금 = [(의무고용 장애인 총수 - 매월 상시 고용 장애인 수) × 부담기초액*]의 연간 합계액 (법 제33조제2항)

⑥2 재건축부담금 _국토교통부

가. 근거법령: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

나. 목적: 주택재건축사업에서 발생되는 초과이익을 환수함으로써 주택가격의 안정과 사회적 형평을 기함

다. 부과 대상: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라. 산정체계

재건축부담금 = (재건축초과이익 / 당해 조합원 수) x 부과율 (법 제12조)

⑥3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가. 근거법령: 「전기사업법」 제51조

나. 목적: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전력산업의 기반조성에 필요한 재원 확보

다. 부과 대상: 전기사용자

라. 산정체계

부담금 = 전기요금의 37/1,000

⑥④ 전기 · 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_환경부

가. 근거법령: 「전기 · 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8조

나. 목적: 제15조에 따른 전기 · 전자제품 회수 · 인계 · 재활용의무 이행 확보

다. 부과 대상: 회수 · 인계 · 재활용의무를 이행이나 대행하지 않은 전기 · 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 공제조합

라. 산정체계

재활용부과금 = 재활용의무량 중 재활용되지 아니한 수량 × 기준비용* + 가산금액

⑥⑤ 전기 · 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 _환경부

가. 근거법령: 「전기 · 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나. 목적: 제16조의4에 따른 회수 및 인계의무 이행 확보

다. 부과 대상: 회수 및 인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대행하지 않은 전기 · 전자제품 판매업자, 공제조합

라. 산정체계

회수부과금 = 회수의무량 중 회수되지 아니한 수량 × 기준비용* + 가산금액

⑥⑥ 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의 수익자 분담금

가. 근거법령: 「지방자치법」 제138조

나. 목적: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또는 공공시설 설치로 인한 이익의 환수

다.부과 대상: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로 특히 이익을 받는 주민 일부

라. 산정체계: 조례로 정함

⑥⑦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출연금_중소기업청

가. 근거법령: 「지역신용보증재단법 」 제7조에 따른

나. 목적: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 기본재산의 재원

다. 부과 대상: 금융회사, 기업

라. 산정체계

대출금의 월중 평균잔액에 대하여 별표의 출연요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단 및 중앙회에 출연 (연 비율 1천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㊽ 지하수이용부담금 _국토교통부

가. 근거법령: 「지하수법」 제30조의3

나. 목적: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

다. 부과 대상: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제8조에 따라 신고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라. 산정체계

지하수이용부담금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 상당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지하수 취수량, 용도 등을 고려하여 시·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한다

㊾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건설비용 부담금_산업통상자원부

가. 근거법령: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8조

나. 목적: 집단에너지공급을 확대하고, 집단에너지사업을 합리적으로 운영

다. 부과 대상: 사업자로부터 집단에너지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사용자)

라. 산정체계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건설비용 부담금 = 용도별 부과 대상 단위 × 단위당 기준단가

㊿ 대체초지조성비 _농림축산식품부

가. 근거법령: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나. 목적: 초지(草地)의 조성·관리·이용 및 보전

다. 부과 대상: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협의를 하고 초지의 전용을 하려는 자

라. 산정체계

대체초지조성비의 납입기준금액 = 제2조제5호에 따른 초지조성단가[경운초지(耕耘草

地)를 기준으로 한다] + 초지조성 후 3년간의 초지관리비

⑪ 축산물 수입이익금 _농림축산식품부 //축산발전기금

가. 근거법령: 「축산법」 제45조

나. 목적: 축산물의 수급 원활과 유통질서의 문란 방지

다. 부과 대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품목을 수입하는 자

라. 산정체계

국내가격과 수입가격의 차액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

⑫ 공공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_국토교통부

가. 근거법령: 「택지개발촉진법」 제12조의2

나. 목적: 공공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 보전

다. 부과 대상: 택지개발지구 내 존치 시설물의 소유자

라. 산정체계

공공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 시설부담금 단가 × (존치하는 부지 면적 + 취득공급부지 면적)

⑬ 원인자부담금 _환경부

가. 근거법령: 「하수도법」 제61조

나. 목적: 하수와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

다. 부과 대상: 건축물 신축·증축 또는 용도변경 시 오수가 일정량 이상 증가되는 경우 해당 건축물 등의 소유자

라. 산정체계: 조례로 정함

⑭ 학교용지부담금 _교육부

가. 근거법령: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나. 목적: 학교용지의 확보를 쉽게 하고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가까운 곳에

있는 기존 학교의 증축을 쉽게 함

다. 부과 대상: 개발사업지역에서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를 개발하여 분양하거나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

라. 산정체계

o 공동주택 : 세대별 공동주택 분양가격×1천분의 8

o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 : 단독주택지 분양가격 × 1천분의 14

⑭ 물이용부담금 _환경부

가. 근거법령: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나. 목적: 주민지원사업과 수질개선사업 등의 재원을 조성

다. 부과 대상: 공공수역으로부터 취수된 원수(原水)를 직접 또는 정수(淨水)하여 공급받는 최종 수요자, 전용수도 설치자, 하천수 사용자

라. 산정체계

물이용부담금 = 최종 수요자에게 물사용량에 비례

마. 면제 및 감면 기준

최종 수요자가 상수원관리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등

⑮ 국제교류기여금 _외교부

가. 근거법령: 「한국국제교류재단법 」 제16조에 따른

나. 목적: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드는 자금에 충당하기 위함

다. 부과 대상: 「여권법」에 따른 여권을 발급받는 사람 등

라. 산정체계

o 복수여권 발급 신청자(유효기간 10년 : 18세 이상) : 국내 15,000원

o 복수여권 발급 신청자(유효기간 5년 : 18세 이상) : 12,000원 등

⑯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금_금융위원회

가. 근거법령: 「한국주택금융공사법 」 제56조에 따른

나. 목적: 신용보증을 통한 주택금융의 활성화

다. 부과 대상: 금융기관

라. 산정체계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금 = 대출금 × 출연요율(별표)

㉗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계정 출연금

가. 근거법령: 「한국주택금융공사법 」 제59조의3제3항

나. 목적: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통한 노후생활자금을 원활하게 공급

다. 부과 대상: 금융기관

라. 산정체계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계정 출연금 = 대출금 ×출연요율(별표)

㉘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_해양수산부

가. 근거법령: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나. 목적: 해양생태계를 인위적인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해양생물다양성을 보전하며 해양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

다. 부과 대상: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거나 해양생물다양성의 감소를 초래하는 개발사업을 하는 자

라. 산정체계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 생태계의 훼손면적 × 단위면적당 부과금액(제곱미터당 300원) × 지역계수

㉙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 _해양수산부

가. 근거법령: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나. 목적: 미래 세대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국가가 해양심층수를 보전·관리하고 환경친화적으로 개발·이용

다. 부과 대상: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 ,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자 및 상업용 목적으로 해양심층수개발업자로부터 해양심층수를 구입하는 자

라. 산정체계

o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 및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자의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

= 평균 판매가격의 1천분의 5

o 상업용 목적으로 해양심층수를 구입하는 자의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

= 해양심층수 평균 공급가격의 1천분의 53

⑧⓪ 해양환경개선부담금 _해양수산부

가. 근거법령: 「해양환경관리법 」 제19조

나. 목적: 해양환경의 훼손 또는 해양오염으로 인한 위해를 예방하고 깨끗하고 안전한 해양환경을 조성

다. 부과 대상: 폐기물해양배출업자

라. 산정체계

해양환경개선부담금 = 오염물질의 배출량 × 단위당 부과금액 × 오염물질의 종류별 부과계수

⑧① 방제분담금

가. 근거법령: 「해양환경관리법 」 제69조

나. 목적: 해양환경의 훼손 또는 해양오염으로 인한 위해를 예방하고 깨끗하고 안전한 해양환경을 조성

다. 부과 대상: 방제선 배치의무자

라. 산정체계

유조선 중 내항선은 1톤당 4.77원을 매1회 입할할 때마다 내는 등의 기준 마련

⑧② 운항관리자 비용부담금 _해양수산부

가. 근거법령: 「해운법」 제22조의2에 따른

나. 목적: 운항관리자를 둠으로써 들게 되는 비용 보전

다. 부과 대상: 내항여객운송사업자

라. 산정체계

운항관리자 비용부담금 = 운항관리자의 보수와 업무수행에 드는 비용

㉝ 한국화재보험협회 출연금_금융위원회

가. 근거법령: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14조

나. 목적: 화재예방 및 소화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과 이에 관한 연구·계몽

다. 부과 대상: 손해보험회사

라. 산정체계

o 공동인수한 보험료 수입의 100분의 20

o 전체 손해보험회사의 수입보험료 총액의 1천분의 2 범위에서 협회가 손해보험회사의 보험사고 감소 등을 위하여 하는 화재 예방활동 등에 드는 비용에 상당한 금액

㉞ 환경개선부담금

가. 근거법령: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

나. 목적: 환경오염의 원인자로 하여금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

다. 부과 대상: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

라. 산정체계

개선부담금 = 대당(臺當) 기본 부과금액 × 오염유발계수 × 차령계수(車齡係數) × 지역계수

㉟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가. 근거법령: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제2항

나. 목적: 서민의 금융생활과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을 지원

다.부과 대상: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등

라. 산정체계

대출금의 월중 평균잔액 X 출연금 요율

㊱ 폐기물처분부담금

가. 근거법령: 「자원순환기본법」 제21조

나. 목적: 폐기물의 순환이용 및 적정한 처분을 촉진

다. 부과 대상: 폐기물을 순환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각 또는 매립의 방법으로 폐기물을 처분하는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 사업장폐기물배출자

라. 산정체계

처분한 폐기물의 양 X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출기준

제4절 OTT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부과 가능성

1. OTT 서비스에 대한 부담금 부과 필요성

앞서 살핀 방송시장의 변화에 따라 방송통신발전기금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OTT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의 부과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수년 동안 개방형 인터넷에 기반한 실시간 및 비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동영상 서비스는 급속하게 확산되었고, 이에 따라 방송영상 콘텐츠 시장의 공급구조와 방송콘텐츠의 소비행태를 변화시켰다. 기술력과 자본력을 기반으로 콘텐츠 경쟁력과 이용편의성을 갖춘 글로벌 OTT 서비스 제공자들은 국내에 진입하여 시장을 선도함에 따라 전통적인 방송플랫폼의 영향력이 약화되고 있는 형국이다.

현재 법적으로는 OTT 서비스에 대한 법적 지위가 모호하며,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의 지위만 인정될 뿐이다. 이에 따라 다른 방송사업자들과 비교하여 규제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대체적 경쟁관계라 볼 수 있는 국내 유료방송서비스와 글로벌 OTT 서비스 제공자와 관계에서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방송시장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 차원에서 OTT 규제방안의 마련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OTT에 대해 기금을 부과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은 기존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이 허가 등 독점적 지위를 인정해주면서 이에 초과이윤 회수를 목적으로 했음을 근거로 하고 있다. 신고 대상인 OTT서비스 제공자에게 기금을 부과하는 것은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성격상 부합하지 않는다고 본다. 그리고 OTT 사업자로 기금을 확대하더라도 글로벌사업자에 대한 기금 집행이 어려운 상황에서 오히려 국내 사업자만 역차별을 당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한다. 반면 찬성하는 입장은 OTT에 대한 기금 부과가 방송통신산업 발전이라는 기금의 목적과 부합하며, 방송콘텐츠를 활용하여 광고수익 등을 얻고 있는 OTT서비스 제공자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적 과제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방송통신발전기금이 마련될 당시와 현재 방송통신시장의 환경이 변화하였고, 수익구조 역시 전통적인 미디어 사업자에서 새로운 미디어 사업자로 이전되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방송통신산업의 진흥의 지원이라는 목적은 여전히 필요하며, 기존에 허가나 승인을 받는 사업자로 한정되었던 기존의 대상에 대한 규율은 변화될 필요성이 있다. 수익자부담금이 아닌 특별부담금으로서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성격을 고려할 때 수익자 관점에서 허가나 승인을 받은 사업자로 국한할 필요는 없다. 특히 여론형성과 정보유통이라는 미디어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공적 과제는 여전히 유효하며 이는 OTT 사업자도 미디어 사업자로서 공적인 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OTT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의 부과는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OTT서비스 제공자와 같은 새로운 미디어 사업자에 대해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헌법적으로 정당한지는 필요성과 별개로 판단이 필요하다.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부담금에 대한 위헌성 판단기준을 바탕으로 이를 판단하도록 한다.

2. OTT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부담금 부과에 대한 헌법적 정당성 판단

가. 방송통신발전기금의 법적 성격에 따른 판단기준

방송통신발전기금은 그 기금 부과 자체가 공익실현을 담보하는 것이 아니며, 기금의 활용을 통해 방송통신산업 진흥에 기여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재정조달목적 부담금의 성격을 가진다. 재정조달목적 부담금은 재정조달을 위해 특정한 반대급부 없이 부과된다는 점에서 조세와 유사한 성격을 갖고 있다. 조세법률주의(헌법 제59조)의 목적은 특정한 반대급부 없이 국민에게 재산을 출연할 부담을 지우는 것인데, 국가는 국민의 재산을 보전하고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자의적인 조세부과를 방지하는 원칙으로 이러한 원칙은 재정조달목적 부담금인 방송통신발전기금에도 역시 적용된다. 실질적으로 국가 등의 일반과세에 대한 재정조달을 목표로 하여 조세를 띄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조세저항이나 이중과세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 부담금의 형식을 남용하면 조세 중심의 재정 조달이라는 헌법상 기본적 재정절차가 교란될 위험이 있으며, 조세에 대한 헌법적 통제장치가 무너질 위험이 크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은 제1조에서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는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환경에 대응하여 방송통신의 공익성·공공성을 보장하고, 방송통신의 진흥 및 방송통신의 기술기준·재난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방송통신 발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방송통신발전기

금은 “방송통신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정 영역에 대한 진흥을 목적으로 재정의 조달을 꾀하고 있기 때문에 조세와는 구분될 수 있으며 기금의 부과대상과 관련하여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 여부 등을 판단하여 헌법적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 특별한 밀접한 관련성 판단

헌법재판소는 앞서 본 것과 같이 부담금의 부과에 대해 그 집단의 동질성, 객관적 근접성, 집단적 책임성, 집단적 효용성의 4가지 기준에 따라 법적 정당성을 판단하고 있다.

1) 집단적 동일성 판단

부담금을 부과받는 대상이 일반국민과 구별되는 동일성을 지녀 ‘특정 집단’이라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특정 사업을 영위하거나 특정행위를 하는 자(국외여행자,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한 자 등)와 같이 동일·유사성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동질성은 입법자가 인위적으로 설정한 동질성이 아니라 역사적·사회적 개념으로 상당한 기간동안 객관적·경험적으로 당해 집단에 특유한 가치의 공유 또는 집단적 연대감을 통해 다른 집단과 구분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를 구체적으로 구분하면 ① 의무자 집단이 동질적 요소에 의해서 일반인과 구별되어야하며 ② 의무자 집단 내부의 납부의무자들 사이에서 동질성의 정도가 유사해야 한다.

<표 3-9> 집단적 동일성 판단 헌법재판소 사례

유형	내용
위헌사례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문예진흥기금의 부과대상을 관련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 한 경우 - 공연 등을 관람하는 것은 모든 국민에게 일상적으로 용이하게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 관람자로서의 국민들 중에 누구를 특별히 문화예술의 진흥이라는 공적 과제에 더 근접한 위치에 있다고 자리매김을 하는 것은 너무나 무리이며, 문화시설 이용자를 공연 등을 관람한다는 이유*만으로 역사적·사회적으로 나아가 법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구분할 만한 동질성 있는 특별한 집단으로 인정하는 것은 무리라고 결정 * 당시 문예진흥기금의 모금대상인 시설을 이용하는 자는 5,700만명

<표 3-10> 객관적 근접성 판단 헌법재판소 사례

	주택건설 사업의 일환으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자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 - 수분양자들의 구체적 사정*을 거의 고려하지 않은 채 수분양자 모두를 일괄적으로 동일한 의무자 집단에 포함시켜 학교용지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없는 차별에 해당되어 헌법과 불합치 * 수분양자들이 공동주택을 동시에 분양받았다는 사실 이외에 주택의 준공 후 실제 거주할 것인지 여부, 초·중등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없는 경우에서부터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다니는 자녀만 있는 경우, 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만 있는 경우, 양자 모두 있는 경우, 그리고 각 학교에 다니는 자녀의 수 또한 서로 상이한 경우에 이르기까지 구체적 사정에 따라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이해관계가 서로 다름
합헌사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개발사업자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는 바는 집단적 동일성이 인정 - 당시 개발사업자들은 ‘개발사업지역에서 100가구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개발하여 분양하거나 공동주택을 건설하여 분양하여 학교용지확보의 필요성을 야기시켰다는 점’에서 형식적으로 일반 국민과 구별되는 동질성을 가지고 있음 - 학교신설의 필요성을 야기하지 아니하는 개발사업자는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납부의무자들은 내부적으로도 위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동일한 정도의 동질적인 특정요소를 가지고 있음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판단기준들을 바탕으로 판단을 할 때 OTT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부담금을 부과함에 있어 일반 국민과 구별되는 형식적 집단적 동일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국내 방송프로그램 다시보기, 유료방송사업자가 제공하는 VoD와 중첩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기존 방송사업자와 동일·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2) 객관적 근접성 판단

부담금의 부과목적에 해당하는 경제적·사회적 과제와 부담금 납부의무자 사이에서 객관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있어야 한다. 부담금의 부과를 통하여 ①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납부의무자 간에 특별한 관계를 전제로 하며 ② 납부의무자들은 부담금을 통하여 달성하려는목적에 있어서 일반납세자나 사회의 다른 집단보다 명백한 근접성이 있어야 한다.

유형	내용
위헌사례	「국민체육진흥법 」에 따라 국민체육진흥기금을 골프장 시설 이용자에게 해당 시설 입장료에 부가금을 부과한 경우 - 수영장 등 다른 체육시설의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 제도는 국민부담 경감 차원에서 폐지하면서 골프장 부가금 제도를 유지하고 - 체육시설 이용비용 다과에 따라 ‘ 국민체육의 진흥 ’ 이라는 공적과제에 대한 객관적 근접성의 정도가 달라진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골프장 부가금을 헌법적으로 정당화할 만한 합리적인 기준이 된다고 보기 어려움
합헌사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에서 개발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경우 - 개발사업자가 개발 사업을 통해서 이익을 창출함과 동시에 학교신설의 필요성을 야기한 자로 학교용지확보라는 공적 과제와 객관적으로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음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제도 - 영화예술의 진흥과 한국영화산업의 발전이라는 공적 과제는 반드시 조세에 의하여만 재원이 조달되어야만 하는 국가의 일반적 과제라기보다 관련된 특정 집단으로부터 그 재원이 조달될 수 있는 특수한 공적 과제의 성격을 가지며 - 영화상영관 관람객은 영화라는 단일 장르의 예술의 향유자로서 집단적 동질성이 있고, 영화 예술의 진흥 발전에 객관적 근접성을 인정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기준을 바탕으로 판단하면 OTT서비스 제공자는 현재 방송통신시장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방송통신발전기금의 목적이 방송통신의 진흥에 있음을 고려할 때 객관적 근접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OTT 서비스 도입 이후 유무선 트래픽의 증가, 망의 QoS 관리를 위한 특수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등의 규정이 신설을 야기하는 등 방송통신의 진흥이라는 공적 과제와 객관적으로 밀접한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3) 집단적 책임성

부담금은 공적 과제 수행에 책임 있는 집단에게 부과되어야 한다. 이는 부담금의 부과대상이 조세외적 부담을 져져야 할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집단으로 묶을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집단 사이에서 밀접한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그 집단적 책임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표 3-11> 집단적 책임성 판단 헌법재판소 사례

유형	내용
위헌사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국민체육진흥기금을 골프장 시설 이용자에게 해당 시설 입장료에 부가금을 부과한 경우 - '국민체육의 진흥' 달성에 관하여 골프장 이용자에게만 부가금 납부하게 하는 것은 집단적 책임성을 인정하기에 무리
합헌사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에서 개발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경우 - 개발사업 지역에서 학교 신설 비용은 개발사업 지역의 기반을형성하는 비용으로서의 성격 인정 - 개발사업자는 학교용지확보라는 과제의 달성에 관하여 조세외적으로 부담을 져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음

OTT 서비스 제공자는 유료방송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방송통신 발전의 목적을 가지고 조세외적 부담을 져야 하는 책임 있는 집단이라 볼 수 있다. 기금은 방송통신콘텐츠의 제작·유통 및 부가서비스 개발 등 지원에 활용되고 있으며, 방송통신서비스 활성화 및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에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OTT 서비스 제공자는 조세외적 부담을 질 수 있는 책임 있는 집단이라 볼 수 있다.

4) 집단적 효용성

부담금의 수입이 부담금 납부의무자의 집단적 이익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기금 등을 조성하기 위한 부담금 부과대상이 해당 부담금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판단기준이 된다.

<표 3-12> 집단적 효용성 판단 헌법재판소 사례

유형	내용
위헌사례	주택재개발사업의 일환으로「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공동주택을 분양 받은자(수분양자)에게 부과할 경우 - 학교용지부담금이 지방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 도)별로 운영되기 때문에 반드시 수분양자들의 자녀들이 다니게 될 학교의 용지확보를 위하여 사용된다고 볼 수도 없음
	'국민체육의 진흥' 달성에 관하여 골프장 이용자에게만 부가금 부과하고 집

	단적 효용성은 국민 모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수준의 효용성을 놓고 부담금의 정당화 요건인 집단적 효용성을 갖추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합헌사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에서 개발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경우 - 자녀 교육에 대한 열의가 남다른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학교의 신설이 담보될 경우 개발사업자는 분양에 있어서의 편의와 분양가격 상승이라는 이익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이고 따라서 개정 학교용지부담금제도는 일정부분 납부의무자의 집단적 이익에도 기여

기금의 용도 범위에 OTT 서비스를 구성하는 콘텐츠 등에 대한 지원이 포함되어 있어 직간접적인 수혜 집단이라 볼 수 있다. OTT 서비스는 콘텐츠를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하고 있으며, 기금은 방송통신콘텐츠의 제작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최근 OTT에 적합한 숏폼에 직접적인 제작 지원을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OTT 서비스 제공자는 집단적 효용성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다.

3. 기타 고려사항

1) 법제도 정비 필요

OTT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부과하는 것이 헌법상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하여도, 조세와 유사한 재정조달목적 부담금의 성격을 고려할 때 명시적이고 구체적인 입법이 반드시 필요하다 할 수 있다.

국내 타 기금의 사례들을 비추어보면 대상과 징수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OTT 서비스 사업자에게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도 이러한 점은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이다.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법적으로 공백이 있는 OTT에 대한 법적인 정의이며, 구체적으로 OTT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집단적 구획이 이루어져야 방송통신발전기금의 부과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징수율 등은 현행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현행 타 사업자에 대한 징수율과 함께, 전통적인 방송사업자의 수입감소로 인한 기금의 감소, 향후 방송통신 발전을 위해 필요한 재정의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정해야 할 것이다.

또힌 기금의 부과를 위해서는 부과 대상의 매출액을 확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금 납부 의무자가 손익계산서 등 매출액을 결정할 수 있는 기초자료의 제출이 필수불가결하다고 할 수 있다. 유료방송사업자는 방송서비스 매출액에 징수율(고시)을 적용하여 부과하고 있으며, 해당 금액은 방송사업자 재산사항 공표집에서 조사·검증된 자료를 활용하고 있다.

[참조]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12조(분담금의 징수)

② 법 제2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매년 3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전년도의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2.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가 분담금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2) 역외사업자 문제

실질적으로 방송통신 생태계를 흔들고 있는 OTT 사업자는 넷플릭스와 유튜브 등 해외사업자이다. 곧 디즈니플러스 등 타 해외사업자의 국내진출 역시 예고되어 있는 상황이다. 해외의 사례를 보더라도 자국의 콘텐츠 보호 등을 위해서 우리나라의 기금과 유사한 재정적 부담을 넷플릭스나 유투브에 지우고 있으며, EU는 자국의 방송시장 보호를 위해 자국 프로그램 쿼터제와 함께 기금 부여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우리 역시 해외 OTT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기금 부과를 할 수 있는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역외사업자에게 기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매출을 확정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앞서 본 것과 같이 매출액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들의 자료제출이 전제가 된다. 문제는 역외사업자가 자료제출을 하지 않는 경우 이를 제재할 수단이 미비하여 자료를 근거로 관련 매출액을 확정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점이다. 매출액을 확정하여 부과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이를 추정할 수밖에 없는데, 부담금관리기본법에서는 산정기준, 산정방법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어[40] 추정부과를 하는 경우 논란의 여지가 크

40) 제4조(부담금의 부과요건등) 부담금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주체, 설치목적, 부과요건, 산정기준, 산정방법, 부과요율 등(이하 "부과요건등"이라 한다)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다.

넷플릭스, 구글코리아와 같은 유한회사는 주식회사와 달리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의 공시, 외부감사 등의 의무가 없다. 그리고 세금 또는 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소관 부처에서 직접 조사해야 한다. 자료 제출 거부시 국세청의 협조를 얻을 수 있는 사후 절차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역외사업자가 납부하지 않는 경우를 살펴보도록 한다. 만약 기금을 체납하는 경우 국세 체납처분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해외 OTT 사업자가 체납한 경우 국내 법인의 자산 압류, 공매 등의 절차를 따라 강제징수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역외사업자의 국내 법인은 이용자 과금이나 계약과는 무관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또한 납부해야 할 방송통신발전기금 규모에 부합하는 역외사업자 국내 법인의 자산 보유 여부는 불투명하다.

<표 3-13> 넷플릭스, 구글 국내법인 현황

구분	업무 내용
넷플릭스서비시스 코리아(유한회사)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로 등록되고 OTT 서비스 운영 및 가입자 관리, 기술/정책지원, 마케팅 등을 담당
넷플릭스 엔터테인먼트 Ltd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부터 영화, 드라마, 예능 등 다양한 장르의 콘텐츠 수급 및 투자, 제작현장 관리 및 지원을 전담
구글코리아(유한회사)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업(인터넷 검색,광고/무역, 전자상거래)

방송통신 발전기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를 고려하면 자산의 압류, 서비스 중지 등을 고려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 통상마찰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27조는 부가통신사업자가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사업의 전부나 일부의 폐지 또는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방송통신발전기금의 부과대상으로 OTT 서비스 제공자를 포함시키는 경우 기금의 납부 거부에 대해 사업의 등록취소 및 폐업명령이 가능하도록 개정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 전기통신사업법 제27조 타법 위반의 경우

제27조(사업의 등록취소 및 폐업명령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부가통신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폐업(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는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취소를 말한다)을 명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폐업을 명하여야 한다.

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제4항에 따른 시정조치의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저작권법」 제142조제1항 및 제2항제3호에 따라 3회 이상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다시 과태료 처분대상이 된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요청한 경우

제4장 방송발전기금 관리와 운용

제1절 부담금 운용 방법

1. 시장의 정부 개입 정당성과 부담금의 운용

일반적으로 시장은 가격 매커니즘과 수요과 공급으로 작동되고 있으며 방송 또는 미디어시장에서도 시장의 논리가 적용되고 있다. 시장내에서 공급자와 수요자는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 하는 과정에서 최적생산량을 결정하고 소비자는 자신의 자산을 기반으로 하여 결정된 가격으로 이를 거래하고 있다. 현실의 방송시장 또한 방송콘텐츠를 직접 구매하는 VoD 시장, 광고를 기반으로 콘텐츠를 제공하는 지상파 방송 시장 또한 이러한 맥락을 같이한다. 다만 사회적으로 가치가 있는 다큐멘터리 등의 콘텐츠는 소위 시장성이 작다는 이유로 과소 공급되고 관련 콘텐츠를 소비하고자 하는 수요자가 존재하더라도 과소 공급되는 등의 시장실패가 발생될 여지가 있다. 이처럼 방송부문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은 표준설정, 콘텐츠 제작 지원, 시청자 지원 등 특수 목적하에 관련 시장에서 발생되는 시장 실패를 정부가 일정부분 개입하여 치유하는 목적으로 설정되고 그 용도를 정하고 있다. 즉 현실적으로 효율적이라는 가격 등의 시장 메카니즘이 공공재, 경제 외부성, 시장 구조(독과점 등)에 따라 시장실패가 발생되며 시장실패를 치유하기 위하여 정부 개입이 정당화되어왔다. 다만, 시장실패를 전제로 정부의 개입을 정당화하는 경험적, 이론적 검증이 이루어여 왔으나, 시장 경제 전체 부문에 정부 개입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러한 요소가 반드시 성공한다는 보장 또한 검증된 바가 없다. 이는 시장실패 발생 시 모든 부문에서 정부 개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시장실패가 존재하는 구조적 문제점 등이 있고 시장실패가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병목현상 등이 유지 되고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개입 최적의 대안인 경우에 국한해서 개입하여야 한다는 실증적이며 이론적 접근 또한 많다. 이러한 논리적 배경에는 정부개입이 필요시 최소화하여한다는 명제하에 정책이 입안되기도 하는데 정부 또한 시장의 정보를 완전히 할 수 없는 플레이어라는 입장이고 이러한 한계점으로 인하여 초기 의도와는 달리 정부실패란 시장 결점을 보완하기 위한 정부활동이 기존의 상태를 더 악화시킬 수 도 있다. 정부실패의 원인은 서비스의 독점적 생산

과 공급(비시장 메커니즘에 의한 공급), 목표의 불명확성과 이에 따른 명확한 성과측정의 어려움, 이에 따른 기술적 비효율성(X-inefficiency) 등이 있다.

상기의 정부실패를 치유하거나 방지하기 위해 공공서비스 업무를 시장(민간)에 위임하거나 공익단체의 감시와 참여 같은 비시장적 방법이 적용되기도 하였다.

교통, 의료, 보편적 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 분야에서 정부의 공적 부문의 국가 도는 지자체의 서비스와 민간 부문이 공존하고 있다.

공공재 성격이 업무를 시장에서 수행하는 것은 공공서비스를 국가 등의 독점공급체계에서의 비효율을 개선하고자 하는 정책적 의도와 함께 해당 부문을 이용하는 국민의 시공간적 최적 선호를 반영하는 공공선택론의 이론적 배경에서도 찾을 수 있다.

즉, 방송부문의 시장실패는 다양한 부문에서 발생가능하다 이는 전술한 바와 같이 시장성을 이유로 과소 공급되는 장르, 특히 시청자의 복지 등에 관한 사항 등 여러 부문에서 기업 가치 극대화 전략에서는 발현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시장실패를 치유하기 위한 과정으로 방송통신발전기금이 방송통신 산업의 진흥, 발전을 위한 토대로 사용되고 있다. 해당 기금의 운용은 정부가 집적 개입하여 특정 사업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접근도 가능하나 상기의 부담금 중 많은 부담금은 전문 운영기관에 위임·위탁하여 접근하는 사례 또한 많다.

공공서비스가 가진 근본적인 한계로 인하여 정부실패가 발생한다는 이론도 있으나, 정부의 행정 등이 민간부문에 위임·위탁되는 것은 신공공관리론(New Public Management)의 이론적 배경 또한 있다. 이는 정부의 비대화와 비효율성을 해소하는 접근법이다. 이는 지속적인 경기침체상황에서 복지국가 등을 위하여 규모적 성장이 있는 정부기능을 유지·확대하기 재정적자가 발생되고 이의 개혁을 통해 생산성을 제고하고자하는 방안이 검토된 바 있다. 이러한 요구는과거 신자유주의 정책입안 당시 공공부문의 기능과 규모의 재검토하고 작은 정부를 지향, 시장 기능을 확대하는 정책으로 입안되었다. 신공공관리론은 영국을 중심으로 공공부문 관리의 새로운 정책 모형으로 검토가 이루어졌는데 현실적으로는 대처리즘에 기반하고 있고, 사상적으로는 신자유주의에 기반하고 있다.

신공공관리론은 관리에 중심으로 두고 성과평가와 효율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의 이론은 준영리부문과 경쟁 촉진을 위해 민간위탁을 이용하고, 비용 축소, 관리의 재량권, 재정적 보상 등의 형태가 있다. 신공공관리론이 민간위탁에 비친 영향은 기존 정부업무

중에서 정부가 개입해야 할 업무와 개입하지 않아야 할 업무를 구분하고, 정부업무 중에서도 민간에 맡기는 것이 더 효율적인 업무를 구분하며, 정부기능 수행방식을 개혁하는 것이다. 이러한 원칙을 통하여 정부업무의 최소화와 민간위탁이 확산되게 되었다.

2. 국가 지자체 업무의 민간위탁에 대한 법제도

국가 또는 지자체의 업무를 위탁하는 법적체계는 정부조직법, 방송법, 전파법, 전기통신사업등의 개별법에서의 위임, 위탁에 과한 규정이 있다. 위임 위탁과 관련한 절차 등을 규정한 법은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구체적인 부문에 대한 위탁의 근거가 되는 법은 상기에 기술한 다양한 법률에 근거를 가지고 있다.

정부조직법 제6조는 행정기관의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제3항은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정부의 행정 업무 등의 일부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부조직법과 유사하게 지방자치법 제104조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상기 2개 법과 연계된 법률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으로서 제1조에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 중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고 있다.

3. 부담금 관리의 위탁 사례 및 체계

가. 개요

정부(또는 지자체)에서 직접 산정·부과·징수·지출 등을 직접 운영, 수탁기관(공공기

관)에서 징수·지출을 하되 정부가 관리 감독하는 체계로 구분된다. 기금담당 부처에서 기금을 공공기관 등에 귀속시키고 관련법에서 정한 사업을 추진하는 체계로 운영하는 형태가 일반적이다. 수탁기관은 기금 관리기관은 해당 재원을 활용한 투자사업(금융권)과 지원대상 등을 발굴하고 선정하는 정부와 금융사 중간의 관리기관으로 존재하는 형태가 일반적이다. 이는 화재보험협회, 연초생산안정화재단, 해양환경공단, 지역신용보증재단및신용보증재단중앙회, 서민금융진흥원 등에 해당된다.

현행 KCA에서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일부인 과기부 소관에 대하여 징수·지출 등의 업무를 지원하고 있으며 국가 주도하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표 4-1> 공공기관의 기금 관리·운용 수탁 사례

기금 명칭	부과/징수기관	비고
국제교류기여금	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화재보험협회 출연금	한국화재보험협회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 특별기여금	예금보험공사	
주택담보노후연금 보증계정 출연금	한국주택금융공사	관리기관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서민금융진흥원	
연초경작지원 등의 사업을 위한 출연금	(재)연초생산안정화재단	담배사업법
원자력연구개발사업 비용부담금	한국연구재단	원자력진흥법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국제교류기여금	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국제교류재단법
국제질병퇴치기금 출국납부금	한국공항공사,인천공항공사 (징수대행기관)	국제질병퇴치기금법
관광지등 지원시설 이용자분담금	관광공사	관광진흥법
회원제골프장 시설입장료에 대한 부가금	국민체육진흥공단	국민체육진흥법
중독예방치유부담금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사행산업통합감독 위원회법
농지보전부담금	한국농어촌공사	농지법
농산물 공매납입금 또는 수입이익금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양곡수입이익금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양곡관리법
축산물수입이익금	농협경제지주	축산법
전기사용자의 일시부담금	한국전력공사	농어촌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한국전력공사	전기사업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	한국석유공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광해방지 의무자부담금	한국광해관리공단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특정물질 제조 · 수입 부담금	한국정밀화학산업진흥회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안전관리부담금	한국석유공사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나. 공적자금상환기금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4조에 따라 공적자금상환기금은 금융위원회가 운용 · 관리하록 규정되어 있다. 해당 기금은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및 부실채권정리기금에 대한 출연, 기금의 부채 상환, 기금의 운용 · 관리에 필요한 비용에 사용하도록 용도가 정해져 있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4조제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 · 관리에 관한 사무를 한국은행총재에게 위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 , 기금재무관 ,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되, 한국은행총재에게 위탁한 경우 금융위원회는 한국은행의 부총재보 중에서 기금수입담당부총재보와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부총재보를 임명하도록 규정하였다. 한국은행 직원 중에서 기금지출직원과 기금출납직원을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기금수입담당부총재보는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부총재보는 기금재무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직원은 기금지출관의 직무를, 기금출납직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각각 수행하도록 하여 수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한국은행 총재에게 위탁하도록 구체화하고 한국은행총재는 매월 기금

의조성 및 운용 상황을 다음 달 20일까지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총재는 매 회계연도의 기금 결산보고서에 기금의 개황(槪況) 및 분석에 관한 서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수입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하는 서류 등을 다음 회계연도 2월 20일까지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한국은행총재가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정하고 있다.

다. 국제질병퇴치기금

국제질병퇴치기금법 제6조에 따른 국제질병퇴치기금은 기금은 외교부장관이 운용·관리한다. 외교부장관은 해당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업무를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 위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국제협력단은 기금을 다른 운영재원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고 있다. 한국국제협력단은 국제 질병퇴치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글로벌 보건다자기구 및 특정 질병 퇴치 이니셔티브에 대한 지원을 통해 개발도상국 질병예방 및 퇴치에 기여하기 위해 해당 기금을 운영하고 있다. 지원현황은 아래의 표와 같다.

<표 4-2> 한국국제협력단의 기금운영 사업

구분	주요 내용
UNITAID 백신개발 및 보급을 통한 질병퇴치 활동	IV/AIDS, 결핵, 말라리아를 중심으로 한 진단방법 간소화, 백신 및 의약품 보급, 의약품 가격 감소, 질병 발생 모니터링 등 기간 :2019-2021, 지원금액 :1,500만불
GAVI 백신개발 및 보급을 통한 질병퇴치 활동	어린이들의 생명보존에 필수적인 백신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의약품 시장 형성 및 의약품의 가격 감소, 의약품 및 백신 보급 기간 :2019-2021, 지원금액 :1,500만 불
Global Fund 백신개발 및 보급을통한 질병퇴치 활동	공공·민간 재원 조성을 통한 경제적 협상력을 발휘해, ATM 치료 및 예방 약·물품 관련 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안정적으로 형성되도록 유도하여 자가로 물품을 구매한 뒤 지원대상국가 조달 기간 :2019-2021, 지원금액 :2,500만 불
CEPI 백신개발 및 비축을 통한신종감염병 대비사업	메르스·라싸열 등 신종감염병 백신·플랫폼 기술 개발, 비축 지원을 통한 신종감염병 대비 기간 :2020-2022, 지원금액 :900만 불

주) 출처 : https://www.koica.go.kr/koica_kr/7410/subview.do

기금수탁관리자는 분기별로 기금의 조성 및 운용 상황을 해당 분기가 끝난 후 40일 이내에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있다.

라. 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술보증기금법 제47조의2에 따라 금융회사,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회사에 기금 운영 등을 위탁하고 있다.

기금을 수탁받은 기관은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하는데 기금의 업무에 관한 사무, 재보증에 관한 사무, 유동화회사보증에 관한 사무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마. 대외경제협력기금

대외경제협력기금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EDCF)은 개발도상국의 산업화 및 경제발전을 지원하고 한국과 이들 국가 간 경제 교류를 증진하기 위해 설치한 한국수출입은행 내 정책기금이다. 기금정책에 대한 심의는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이루어지며, 기획재정부 장관을 포함한 외교부 장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등 12명의 위원이 기금의 운용, 관리에 관한 기본정책과 계획, 결산보고사항 등을 논의하고 있다. 관리 주체는 기획재정부가 되며, 실질적인 업무는 기획재정부의 위탁을 받은 한국수출입은행이 EDCF라는 기금을 담당하고 있다.

ODA중에서도 유상원조를 전담하고 있는 EDCF는 1987년 설치된 이후 2011년 말까지 세계 46개 개발도상국의 251개 개발사업에 대해 약 7조 5,388억 원의 원조자금을 승인하였다. EDCF는 상하수도설비, 병원, 교통 등 경제발전의 기초가 되는 사회간접자본시설의 건설에 소요되는 개발자금차관 이외에도 기자재차관, 민자사업차관 등 개발도상국 정부 또는 법인에 대한 다양한 차관 지원 수행하고 있다.

법률로서는 기획재정부가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제9조에 따라 대외경제협력기금을 운용·관리 주체로서 규정하고 있다. 실제적인 운영은 제9조제2항에 따라 한국수출입은행에

위탁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한국수출입은행에 위탁하여 한국수출입은행의 이사 중에서 기금수입 담당 이사와 기금지출원인행위 담당 이사를, 한국수출입은행의 직원 중에서 기금지출직원과 기금출납직원을 각각 임명하고 있다. 그리고 기금수입 담당 이사는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 담당 이사는 기금재무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직원은 기금지출관의 직무를, 기금출납직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각각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기획재정부장관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수탁한 한국수출입은행의 위탁사무를 감독하며,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법률로서 규정하고 있다.

대외경제협력기금은 한국수출입은행에서 그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경비를 기금에서 부담하고 있다.

바. 문화재보호기금

문화재보호기금은 문화재 보호에 필요한 예산의 정확한 예측이 불가능함에 따른 안정적이며 신축적인 자금 운용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2010년부터 운용되기 시작되었다. 해당 기금은 문화재보호기금법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관리·운용하는데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국문화재재단이나 문화재청장이 지정하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위탁할 수 있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회계사무, 납부금의 수납 및 관리에 관한 사무, 여유자금 운용에 관한 사무이다. 업무를 수탁받은 기관은 매년 5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기금운용 계획안을 수립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결산보고서를 다음 해 2월 10일까지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 과학기술진흥기금

과학기술진흥기금은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운영세칙을 두어 기금 설치근거, 관리업무 위탁근거, 운영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해당 기금의 관리는 한국연구재단에 위탁하고 있다. 수탁기관은 기금지원대상사업자의 선정·지원,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보고서 작성, 기금의 운용·관리에 따르는 회계, 사업준비금 등 기금의 운용, 사

업자에 대한 사업진도, 사업완료, 사업성과 등 사후관리, 기금운용 · 관리 세부규정 작성 · 시행, 투자조합 출자사업에 관한 업무, 기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여 위탁하는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수탁기관은 외부전문가 및 내부관계자로 구성한 위원회를 별도로 정하여 운영한다.

아. 소결

기금을 운영에 관하여 업무를 위탁하는 대부분의 법체계는 공공기관 등에 기금의 부과/징수/지출 등의 업무를 위탁한 경우 법령 및 시행규칙 또는 세칙을 정하여 해당기관과 중앙부처와의 업무절차 및 업무권한을 규정하고 있다.

< 기금 운영 행정규칙(위탁기관) 사례(전수) >

1. 과학기술진흥기금운용세칙	8. 소상공인 시장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
2.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및 운용 요령	9. 수산발전기금운용관리요령
3. 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10. 자동차사고 피해자지원기금 관리운용규정
4.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규정	11.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운용규정
4.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운용규정	12. 전력산업기반기금 운용관리규정
5. 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13.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
6.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 촉진 기금 관리 운용에 관한 규정	14.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
7.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 촉진 기금 관리 운용에 관한 규정	

타법사례의 시사점은 우선 수탁기관으로부터 첫째,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회계사무를 위탁하고 해당 회계를 별도로 분리하고 있다. 두 번째, 해당 기금이 사업자 등의 선정 업무가 포함된 경우에는 사업자 선정, 집행 등의 업무를 포함하여 업무를 위탁하고 있다. 셋째, 수탁기관의 이사 또는 이에 상응하는 자 또는 대표를 기금의 관리 · 운영의 책임자로 두고 있다. 넷째 기금 관련 납부금의 수납 및 관리에 관한 사무 또한 위탁 사무로 규정한 경우가 있다. 다섯째 기금을 관리하는 국가기관이 기금을 총괄 운영하고 있으나 수탁받은 기관이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국가기관 등에 보고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다.

제2절 방송통신발전기금 위탁 운용 방안

1. 절차 및 업무

현재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운용함에 있어 대부분의 업무를 직접수행하고 있다. 이는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크게는 정책적 방향에서부터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서 정한 용도별로 사업을 집행하고, 지원 대상 사업자를 선정하는 일련의 업무를 소화하여야 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신공공이론, 주인대리인 문제 등 다양한 이슈가 발생가능하여 기금의 운용의 세부적인 사항을 전문기관에게 위탁하고 정책적 방향 및 수탁기관의 관리감독을 국가에서 통제하는 방안이 있다.

다양한 국내 법제도에서 규정된 바와 같이 중앙부처는 관련 기금의 전반적인 사항을 관리하되 회계, 구체적인 지원대상 사업자의 선정, 시장상황을 고려한 징수율 검토, 5개년 운영계획에 관한 업무를 위탁을 통하여 추진하고 해당 수탁 기관을 관리·감독하는 방안이 있다.

우선 효율적 운용을 위해 기금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우선 ①수탁기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회계사무를 위탁하고 해당 회계를 별도로 분리하여야 한다. ② 해당 기금이 사업자 등의 선정 업무가 포함된 경우에는 사업자 선정, 집행 등의 업무를 포함하여 업무를 포함하여 세부적인 실행 업무를 포함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에서 기금의 관리·운영을 책임질 수 있는 자를 선정하고 정기적인 보고와 관리감독을 수행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④ 기금 관련 납부금의 수납 및 관리에 관한 사무 또한 위탁 사무로 규정하여 소모성 업무를 위탁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내부 역량 강화에 자원을 순환할 수 있다. ⑤ 수탁받은 기관이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보고하고 국가기관은 이를 승인하는 절차를 두어 다양한 전문가들이 계획안에 참여하여 시장 전반의 이해도를 높이는 절차를 마련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절차 등을 고려한 수탁기관의 업무의 흐름도는 다음 그림과 같다.

[그림 4-1] 기금 관리 수탁기관 업무 절차(안)

정책 지원	사업별 협약 단위 재원배분 자료 “시행계획” 작성, 5개년 중기 재정계획, 단년도 사업예산 심의 대응, 관련 제도 정비 ※ 정책지원 중 부과기준 등의 법제도 지원 포함
⇩	
협약	사업비편성 내역의 적절성(사업비 산정기준 등), 서류 적부심사 등 수행기관(수혜기관)에서신청한 수행계획 변경, 검토/승인 통보 등
⇩	
사업비 교부	전담기관에서 사업계획 대비 수행실적 현황 검토 후 사업비 교부
⇩	
현장점검	진도점검, 사업비 관리, 수행능력 적정성 등을 점검
⇩	
사업비 정산	사업비 정산내역 검증 및 반납
⇩	
성과 평가	평가 기본계획 수립(일반적으로 4월), 진도점검(8~9월) 후 최종평가(차년도 2~3월), 부처 보고

2. 수탁기관의 세부 업무

가. 중기 및 차년도 기금운용계획 수립

「국가재정법」제66조 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매년 방송통신발전기금은 향후 5개년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여 기재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기준으로 차년도 기금운용계획(예산)을 수립, 기재부 및 국회 제출하는 절차를 가진다. 이에 따라 수탁기관은 관련 계획을 마련하여 방송통신위원에 보고하고 이를 확정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표 4-3> 기금운용계획 관련 업무 절차

구 분	업무내용	관련근거
차년도 중기사업계획서 제출 (과기부→기재부, 1월말)	향후 5년간 중기 재정추계 및 사업계획서 제출	- 국가재정법 제66조
차기년도 기금운용계획 작성지침 및 지출한도 통보 (기재부→과기부, 3월말)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세부사항 검토 및 전시기금운용계획 수립 등	- 국가재정법 제66조
기금운용계획 부처안 제출	기금운용심의회를 거쳐 기금	- 국가재정법 제66조

(5월말) (과기부→기재부, 5월말)	운용계획 부처안 제출	
기금운용계획 정부안 제출 (기재부→국회, 8월말)	기재부 심의 대응 및 기금운용계획 정부안 제출	- 국가재정법 제68조
국회 예산심의 및 차년도 예산 확정 (국회의결, 12월초)	예산 국회(상임위→예결위→본회의)대응 및 예산 확정	- 국회법 제84조

나. 기금결산

수탁기관은 「국가재정법」 및 「국가회계법」에 따라 기금결산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방송통신위원에 제출한다.

<표 4-4> 기금결산 업무 절차

구 분	업무내용	관련근거
각 일선관서 출납정리 (1월 15일)	회계연도 세입·세출 마감	
결산보고서 제출 (KCA→주무부처, 2.15.) (주무부처→기재부, 2월)	결산보고서 작성 및 제출 주무부처 결산검토 및 제출	- 기금운용·관리규정 (방발 제19조, 정진 제14조) - 국가재정법 제58조
국가결산보고서 제출 (기재부→감사원, 4월 10일)	기재부는 회계연도마다 국가결산보고서를 감사원에 제출(4월10일까지)	- 국가재정법 제59조
국가결산보고서 제출 (기재부→국회, 5월말)	감사원의 검사를 마친 국가 결산보고서는 기재부가 국회 제출	- 국가재정법 제61조 헌법 제99조
국회 상임위 등 결산심의 (8월말)	결산 국회(상임위→예결위) 심의 대응	- 국회법 제128조의2
국회 결산 확정 (9월 정기국회)	예결위를 거쳐 본회의 결산 확정	- 국회법 제128조의2

다. 수탁기관의 지원

“정보통신방송사업 시행계획 *?” 수립을 위해 사업별 재원배분 계획 등 협약사업 단위로 세부자료를 작성하고 사업예산 배분(협약단위 수행기관, 사업비)을 확정하는 절차를 지원하여야 한다. 유사 · 중복 사업을 배제, 신규사업 발굴, 예산 과목구조 정비 등을 통해 방송통신발전기금의 효율적 분배 고려하여야 한다.

라. 수탁기관의 협약 관리

수탁기관은 협약(협약서 및 수행계획서 등), 변경 등을 직접 관리하고 보고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마. 사업비 교부 및 수행계획 변경

수탁기관에서는 정부재정집행계획에 근거하여 수행기관으로부터 신청받은 사업비를 교부하고, 만일 사업목표 변경, 총괄책임자 변경, 사업 비 · 세목간 변경 등 사업수행계획 변경에 대해 검토하여 승인 처리하는 절차가 있어야 한다.

바. 현장실태조사

수탁기관, 위탁용역사업자의 사업추진 진도점검, 사업비 관리, 수행능력 적정성 등을 점검하는 절차와 이의 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재정팀과 사전점검 체크리스트 협의 및 관련 법령 · 규정 준수 여부, 보조금 집행관리, 계획 대비 실적, 후속조치 이행여부 점검하여야 한다.

사. 정산 관리

수탁기관은 정산보고서와 함께 사용항목별 증빙자료 등을 제출받아 사업비 사용실적에 대한 정산업무 수행하고 정산을 위한 전문 회계법인 공모·선정, 수행기관은 정산 전문기관

에 관련 증빙자료 제출을 통해 정산을 실시하여야 한다.

아. 평가 관리

평가 기본계획을 마련하여 중간보고서 진도점검 후 최종평가하여 사업을 관리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제3절 방송통신 발전기금의 용도

1. 제도 및 지출 현황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6조에서 규정하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용도는 1. 방송통신에 관한 연구개발 사업, 2. 방송통신 관련 표준의 개발, 제정 및 보급 사업, 3. 방송통신 관련 인력 양성 사업, 4. 방송통신서비스 활성화 및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 5. 공익·공공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방송통신 지원, 5의2.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와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의 공익적 프로그램의 제작 지원, 6. 방송통신콘텐츠 제작·유통 및 부가서비스 개발 등 지원, 7.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방송프로그램 및 미디어 교육 지원, 8. 시청자와 이용자의 피해구제 및 권익증진 사업, 9. 방송통신광고 발전을 위한 지원, 9의2.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7항에 따른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 운영 비용 지원, 10. 방송통신 소외계층의 방송통신 접근을 위한 지원, 11. 방송통신 관련 국제 교류·협력 및 남북 교류·협력 지원, 12. 해외 한국어 방송 지원, 13. 「전파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금, 14. 「전파법」 제7조제5항에 따라 반환하는 주파수할당 대가, 15.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제7조의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의 수행을 위한 지원, 16. 그 밖에 방송통신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17. 공공성 제고와 방송통신 진흥 및 시청자 복지를 위하여 융자 및 투자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및 과학기술 정보통신부는 17개 사업에 기금을 집행하고 있으나 현행 남북 교류·협력 지원, 방송통신산업 원천기술개발, 출연연구개발지원에는 기금이 집행되고 있지 않다.

기금 배분의 적정성은 방송통신발전기금이 지원하는 사업을 방송통신발 전기본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항목별로 구분하여 집행되는지 살펴보면 더 잘 알 수 있다. '방송통신' 분야로 묶어서 방송과 통신 분야에 각각 균형적으로 얼마나 적절게 배분되는지, 실질적으로 융합형 서비스인 방송통신 분야에 얼마나 지원되고 있는지 등은 다소 모호한 측면이 있다. 예산 운용 계획안의 사업명을 기준으로 '방송통신'이라고 구분하더라도 상당한 금액이 방송이 아닌 통신이나 전파 쪽에 지원되고 있다.

2019년 및 2020년 지출현황은 다음의 표와 같다. 방송분야 집행규모에서 가장 큰 비중

을 차지하는 영역은 방송인프라 지원, 미디어 다양성 및 공공성 확보, 시청자 권익보호 및 참여 활성화이고 다음이 차세대 융합형 콘텐츠 산업 육성, 방송콘텐츠진흥 , ICT 창의기업 육성에 해당한다. 국내 미디어 시장 활성화 제고를 위해 양질의 콘텐츠 제작에 많은 재원이 투하되고 있다.

<표 4-5>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출 현황 (단위 : 억원)

사 업 명	사 업 내 용	2019	2020
콘텐츠방송산업육성	차세대 융합형 콘텐츠 산업 육성, 방송콘텐츠진흥 , ICT 창의기업 육성 등	1,619	1,798
ㅇ정보통신방송국제협력	개도국 정보통신방송 개발협력지원 , 정보통신방송 해외진출지원 등	111	114
ㅇ디지털방송전환기반구축	저소득층 디지털방송 시청지원	21	13
ㅇ정보통신방송기반조성	K-ICT전파자원선순환개발환경조성 , 전파기반 신산업 창출 및 중소기업 육성 등	92	90
ㅇ행복한방송통신환경조성(KCC)	방송인프라지원 , 미디어 다양성 및 공공성 확보,시청자 권익보호 및 참여 활성화 등	1,853	1,870
ㅇ이용자보호및공정경쟁	소외계층통신접근권보장	17	18
ㅇ통신정책지원	공정경쟁및이용자보호 ,네트워크기반조성	288	261
ㅇ전파활용방송서비스산업	전파방송산업활성화 , 주파수회수및재배치손실보상 , 전파이용질서확립 , 전파연구기반조성	385	395
ㅇ방송통신인터넷환경조성(KCC)	안전한인터넷정보활용기반구축	102	112
ㅇ인터넷융합산업	스마트기술개발 , 인터넷이용환경도고화 콘텐츠디바이스기술개발 ,ICT사업화지원 ,	1,461	1,602
ㅇ정보통신융합산업	출연연연구개발지원	2,181	3,196
ㅇSW산업진흥	SW산업경쟁력강화	280	293
ㅇ정보통신방송연구지원	방송통신산업 원천기술개발 , 출연연구개발지원 , 방송통신서비스 활성화기반구축 등	-	-
ㅇ정보통신방송기반조성(통신)	네트워크 인프라 구성, 인터넷 이용환경 고도화, 차세대인터넷비즈니스경쟁력강화 , 주파수회수및재배치손실보상 등	-	-
합계		8,410	9,762

2. 신규 수요에 대한 제언

현행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이 기금의 용도를 매우 광범위하게 규정되어 있다. 이는 방송통신발전이라는 제도적 목적하에 시장의 변화, 기술수용의 변화 등에 따라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용도가 변경되거나 확장되어 되어왔다. 그러나 관련 조문의 개정 사항(2010년부터 현재)은 기금의 조성,기금의 용도와 관련하여 큰 개정사항은 없다.

'방통위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에는 현행 기금의 용도에 부합되는 내용으로서 시청자권익증진 부문에 시청자미디어 재단의 인프라 관련 사업(시설 건축 등)에 예산이 배분되어 있으나 큰 변화 없이 예산이 집행되는 등 제한적인 용도하에서 운용되고 있다.

최근 시장은 융합환경, 5G 등 고려한 기술발전, 시장구조변화, 이용자보호 등에 대한 연구 및 제도개선, 공적기구에 의한 광고데이터유통 플랫폼 구축, AR/VR 등 신규 융합서비스 제작/개발, 중소 제작사 창작 지원, 취약매체 지원, 방송콘텐츠 아카이브 등 다양한 기금 수요가 새롭게 발생되고 있다.

기금의 용도는 기존에는 물적, 제작지원 중심의 일괄·총액 할당방식(lump-sum)의 틀에 새로운 방식 적용이 필요하다.

전통적 미디어는 지원과 균형발전을 보조하고 지원하는 체계로 용도를 설정하고 신규 미디어 혹은 시장 혁신형 미디어는 개발, R&D 등으로 구분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국내자료

김광재, ‘ 방송통신발전기금 , 정당성과 그 정책적 방향 ’, 방송문화, 한국방송협회, 2016. 11.

김광재, 방송통신발전기금 , 운용 및 제도 합리화를 위한 제안. 방송문화, 한국방송협회 , 2018. 1.

김승환,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 제도 개선, 방송문화, 한국방송협회 , 2019.6.

유승훈, 방송발전기금 징수율의 경제학적 검토, 방송문화, 한국방송협회 , 2012. 11.

이화진, 과학적인 기금징수와 공적 활용방안 마련돼야, 방송문화, 한국방송협회 , 2005.2.

정두남, 융합환경 대응을 위한 방송통신발전기금제도 개선 방안연구, kobaco, 2019.

정두남, OTT 시대 방송통신발전기금 제도 개선 방안 - 기금 부과 대상 확대 방안을 중심으로, 방송문화 , 한국방송협회 , 2020. 9.

홍종윤, 정영주, 방송통신발전기금 제도 개선을 둘러싼 담론 지형과 정책적 함의, 방송통신연구, 한국방송학회 , 2019. 10.

기획재정부 ,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 각 연도

방송통신위원회 , 스마트폰 · PC 이용행태, 2020.

방송통신위원회 , 2020 방송매체 이용 행태 조사, 2020.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20 방송산업실태조사보고서 , 2020.

圖說 法律用語辭典, 법전출판사 , 2017.02.15.

해외자료

European Commission (2007.12.11). Directive 2007/65/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1 December 2007 amending Council Directive 89/552/EEC on the coordination of certain provisions laid down by law, regulation or administrative action in Member States concerning the pursuit of television

broadcasting activities.
European Commission (2018. 11. 28). Directive (EU) 2018/1808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Union. Available: https://eur-lex.europa.eu/eli/dir/2018/1808/oj.
European Commission (2018. 12. 5). Revision of the Audiovisual Media Services Directive(AVMSD). Available: https://ec.europa.eu/digital-single-market/en/revisionaudiovisual-media-services-directive-avmsd.
Thomse, S. (2017. 3. 28). Australia's 'Google tax' has been approved. BUSINESS INSIDER AUSTRALIA, Available: https://www.businessinsider.com.au/australiasgoogle-tax-has-been-approved-2017-3.
CNC, traitement commission de la culture du senat.
OECD, Revenue Statistics OECD, 2007.

판례

헌재 1998. 12. 24. 98헌가1
헌재 1999. 10. 21. 97헌바84
헌재 2002. 9. 19. 2001헌바56
헌재 2003. 5. 15. 2001헌바90
헌재 2003. 1. 30. 2002헌바5
헌재 2004. 7. 15. 2002헌바42
헌재 2003. 7. 24. 2001헌바96
헌재 2005. 3. 31. 2003헌가20
헌재 2003. 7. 24. 2001헌바96
헌재 2008. 2. 28. 2006헌바70
헌재 2008. 9. 25. 2007헌가9

헌재 2008. 11. 27. 2007헌마860
헌재 2019. 12. 27. 2017헌가21

홈페이지

https://ebadak.news/2020/12/27/coupang-play/

저 자 소 개

남 승 용

·동국대 경제학과 석사
·동국대 경제학과 박사수료
·현 미디어미래연구소 연구위원

이 순 환

·고려대 법학과 석사
·고려대 법학과 박사수료
·현 미디어미래연구소 책임연구원

권 오 상

·연세대 경영학과 석사
·연세대 법학과 박사
·현 미디어미래연구소 선임연구위원

김 민 주

·연세대 법학과 석사
·연세대 법학과 박사수료
·현 미디어미래연구소 위촉연구원

최 민 정

·성공회대학교 중어중국학 학사
·현 미디어미래연구소 연구원

성 지 연

·인하대 언론정보학과 석사
·인하대 언론정보학과 박사
·현 미디어미래연구소 연구위원

방통융합정책연구 KCC-2020-2

방송통신발전기금중장기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020년 12월 31일 인쇄
2020년 12월 31일 발행

발행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발행처 방송통신위원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TEL: 02-2110-1323
Homepage: www.kcc.go.kr